
碩士學位論文

青少年犯罪의 豫防과 對策에 관한 研究

- A STUDY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OF JUVENILE DELINQUENCY -

指導教授 金 秀 吉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司法行政專攻

朴 昌 植

1993年 11月

青少年犯罪의 豫防과 對策에 관한 研究

- A STUDY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OF JUVENILE DELINQUENCY -

指導教授 金 秀 吉

이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3年 11月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司法行政專攻



朴昌植의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3年 11月

委員長 _____ 印

委員 _____ 印

委員 _____ 印

目 次

I. 序 論	1
1. 研究의 目的	1
2. 研究의 方法과 範圍	2
II. 青少年 犯罪原因에 관한 諸理論	4
1. 青少年 犯罪의 意義	4
2. 青少年 犯罪의 理論的 特性	5
III. 青少年 犯罪의 現況	14
1. 青少年 犯罪의 實態分析	14
2. 青少年 犯罪의 特徵	27
IV. 青少年 犯罪의 原因	35
1. 個人的 原因	35
2. 家庭環境的 原因	39
3. 教育環境的 原因	48
4. 社會環境的 原因	52
V. 青少年 犯罪의 豫防과 對策	63
1. 青少年 犯罪의 豫防	63
2. 制度的 改善을 통한 豫防對策	77
3. 總括的 考察	94
VI. 結 論	96
參 考 文 獻	100
英 文 抄 錄	105

表 目 次

〈表 1〉	總犯罪比 青少年犯罪 構成比	14
〈表 2〉	少年 成人別 刑法犯 人員 및 構成比	15
〈表 3〉	少年 刑法犯 年齡層別 現況	17
〈表 4〉	青少年犯罪 類型別 現況	18
〈表 5〉	青少年犯罪의 動機別 現況	20
〈表 6〉	青少年 犯罪者 職業別 現況	21
〈表 7〉	青少年 犯罪者의 教育程度別 現況	22
〈表 8〉	青少年 犯罪者의 生活程度別 現況	24
〈表 9〉	青少年 犯罪者의 家族關係別 現況	25
〈表 10〉	青少年 犯罪者의 前科別 現況	26
〈表 11〉	學生犯罪의 動向	31
〈表 12〉	學生犯罪의 類型別 動向	32
〈表 13〉	學生犯罪의 動機別 動向	32
〈表 14〉	青少年 癮藥類事犯 年齡別 現況	33
〈表 15〉	青少年 藥物 使用 趨勢	34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우리 사회는 지난 60년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기점으로 70년대 이후 그 어느 시대보다 빠른 속도로 다양한 사회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점차 가속화 되어 가는 사회 변화에 수반하여 産業化의 촉진은 수 많은 인구를 도시로 집중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격한 都市化 현상을 이루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전통적인 價値觀과 規範의 변화는 이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을 낳게 되었고 그들은 좌절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 犯罪의 길로 접어들게 되며 또한 再犯의 유혹으로 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犯罪者로서의 생활을 반복하게 됨으로써 현대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매우 새롭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 중 靑少年 犯罪와 非行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靑少年들은 성인이 되어가는 과도기 속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로 인해 불안과 갈등,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으며 쉽게 외부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범죄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최근에는 비행동기나 목적이 불분명한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粗暴化, 集團化, 低年齡化, 累犯化 되어가고 있고 특히 마약범죄와 학생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靑少年犯罪가 사회문제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주인공들인 靑少年들을 건전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保護, 育成, 指導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장래는 보장받을 수 없고 둘째, 성인 범죄자의 대다수가 청소년 시절부터 범죄 또는 범죄적 생활에 종사해 온 것으로 보아 靑少年犯罪를 예방할 수 있다면 곧 犯罪一般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靑少年을 장차 한 나라를 책임질 주인공이라고 볼 때 靑少年들이 犯罪少年으로 타락하거나 그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게 자란다면 이는 참으로 국가장래를 위해 크나 큰 중대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듯 靑少年犯罪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靑少年犯罪의 예방을 위한 사회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대책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본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지도·보호·육성하기 위한 전제로서 청소년범죄의 실태와 원인 분석 그리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최근 10여년간의 靑少年犯罪의 현황을 분석, 검토하고 그 원인을 밝힘과 동시에 靑少年犯罪의 豫防과 對策을 강구해 봄으로써 큰 社會問題 중의 하나인 靑少年犯罪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研究의 方法과 範圍

1) 研究方法

靑少年犯罪에 대한 연구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文獻研究과 실증적인 調査研究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나 본 논문에서는 文獻研究에 제한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는 靑少年犯罪의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에 의한 靑少年白書, 犯罪白書 등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靑少年의 특징과 범죄발생의 원인을 문헌에 의해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靑少年犯罪의 豫防과 그 對策을 강구해 보았다.

2) 研究의 範圍

靑少年犯罪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그 犯罪原

인도 少年犯의 個人的 素質, 家庭環境, 學校環境, 社會環境 등 여러 면에서 고찰되고 있다. 靑少年犯罪는 靑少年 個人的 素質뿐만 아니라 靑少年時期의 心理學的 原因, 社會學的 原因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靑少年犯罪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비추어 이들 諸原因들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靑少年犯罪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靑少年犯罪의 一般的인 原因들을 살피기에 앞서 靑少年犯罪의 生物學的, 心理學的, 社會學的 理論들을 고찰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제Ⅱ장의 靑少年犯罪 理論들을 바탕으로 하여 靑少年犯罪의 최근 10여년간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아울러 量的·質的인 면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제Ⅳ장과 제Ⅴ장에서는 靑少年犯罪의 原因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靑少年들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하기 위한 예방 대책을 家庭, 社會, 學校, 制度면에서 강구해 보았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本稿의 연구내용을 요약하였으며 靑少年들이 건전하게 육성되기 위해서는 家庭, 社會, 學校, 政府 모두가 협력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II. 靑少年 犯罪原因에 관한 諸理論

1. 靑少年 犯罪의 意義

靑少年의 시기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성장·발달해가는 삶의 한 과정으로서 성인에 이르는 전단계 또는 자아확립의 과도기적인 시기로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¹⁾ 그러나 靑少年期에 대한 일정한 연령 한계를 두고 있지 않아 靑少年의 개념에 대해서는 시대·사회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靑少年의 연령에 관한 통일된 法律規定이 없다. 다만 民法 제 4조는 20세 미만, 刑法 제 9조는 14세 미만, 兒童福祉法 제 2조와 勤勞基準法 제 50조 에서는 13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靑少年 犯罪는 보통 少年犯罪(Crime Juvenile)라고 불리며 이보다 넓은 개념으로써 少年非行(Juvenile Delinquency)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현행법이 靑少年 犯罪를 成人犯罪와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靑少年이 아직 인격 형성기에 있고 순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刑罰보다는 敎育에 중점을 두고 환경의 조정과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의 실시와 형사처벌에 대한 특별절차를 취함으로써 이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함에 있다.²⁾

현행법상 靑少年 犯罪란 刑罰法規에 저촉되는 行爲를 하였거나 장래 刑罰法規에 저촉되는 行爲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犯罪行爲, 觸法行爲, 虞犯行爲를 말한다(소년법 제 4조). 따라서 靑少年 犯罪者에는 犯罪少年, 觸法少年, 虞犯少年이 포함된다. 여기서 犯罪少年은 14세이상 20세

1) 崔炫, "靑少年 非行에 대한 社會科學的 照明", 「人權과 正義」, 大韓辯護士協會, 1990. 8. p. 8.

2) 崔華淑, "靑少年犯罪의 家庭環境 要因과 家庭環境의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淑明女子大學校 敎育大學院, 1991. p. 6.

미만의 소년으로 刑罰法規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서 刑事責任을 지는 소년을 말하며(동법 제 1항 1호), 觸法少年이란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少年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이나 刑法 제 9조에 의해 刑事未成年者로 형사책임이 없는 소년을 말하며(동법 제 1항 2호), 虞犯少年이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는 성벽을 지녔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고 범죄성을 지닌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어 그 자체는 犯罪가 아니지만 犯罪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者를 말한다(동법 제 1항 3호).

흔히 非行少年이라 하는 경우에는 이 三者를 모두 포함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의 犯罪少年은 觸法少年과 虞犯少年을 포함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의 靑少年犯罪의 개념은 犯罪少年, 觸法少年, 虞犯少年을 포함한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2. 靑少年 犯罪의 理論的 特性

현대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靑少年犯罪의 발생 원인에 대한 견해는 生物·心理學的原因 理論과 社會學的原因 理論으로 대별된다고 하겠다. 生物·心理學的 理論은 犯罪를 독립된 개인의 행위로서 즉 유전, 인종, 신체적 특징, 성격, 정신이상 등 범죄자 자신에게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社會學的 理論은 범인이 처해 있는 사회 구조적 조건과 그 여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³⁾ 그러나 犯罪는 개인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 환경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犯罪의 원인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行爲者의 特性(素質)

3) 李國炯, "靑少年 非行 原因과 豫防對策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檀國大學校 敎育大學院, 1989. p. 10.

에만 중점을 두거나 行爲者의 環境에만 중점을 두고 분석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素質과 環境은 서로 대립·배척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1) 生物學的 原因論

이 이론은 신체 발달상의 결함 및 정상인과 구별되는 특수체질이 非行의 原因이라고 한다. 즉 犯罪의 원인을 과악함에 있어 사회적 여건과 사회구조적 결함보다 개인의 신체 특질(인간이 생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유한 구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⁴⁾ 대표적인 사람으로 실증주의 범죄학파의 창시자인 Cesare Lombroso는 범죄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 다르며 犯罪者는 진화론적으로 볼 때 원시적인 인간이라고 주장한다.⁵⁾

Lombroso 외에 생물학적 관점에서 범죄학계에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William Sheldon을 들 수 있는데 그는 태아의 형성 과정에서의 개인차는 犯罪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특이한 체질과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⁶⁾

2) 心理學的 原因論

정신심리학적 이론은 行爲者가 갖고 있는 Personality를 분석하여 犯罪의 原因을 구하려는 이론으로 행위자의 특성 즉 생리적·유전적 특질, 가치관, 목표, 충동, 관심 등을 대상으로 한다. 靑少年犯罪와 非行原因에 관한 心理學的 理論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4) Ian Taylor, Paul Walton and Jack Young, *The New Criminology: for a social Theory of Devianc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1), p.40.

5) 鄭榮錫, 「刑事政策」, 法文社, 1990, pp.42-43.

6) 慎鎭揆, 「犯罪學 兼 刑事政策」, 法文社, 1991, PP.137-138.

(1) 精神分析學的 理論

이 이론은 犯罪을 인간의 내부에 있는 심리학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적절한 사회화 과정을 밟지 못한 결과로 본다.⁷⁾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非社會的이기 때문에 신생아가 범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社會化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S. Freud는 인성은 原慾, 自我, 超自我로 분화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자아는 原慾, 超自我 등과 더불어 외계와의 관계를 역학적으로 적절하게 조정하고 조화시켜야 한다고 한다.⁸⁾ 이 三者의 관계가 조화를 이룰 때 개인은 정신 건강이나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으며 그 균형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自我의 힘이 약화되어 정신적 고통과 신경질이 생기고 또한 原慾의 충동에 따라 反社會的 行爲를 하게 되는 것이다.⁹⁾ 정신분석학적 이론에 의하면 인격형성과정에서 심리적 외상을 받을 경우 靑少年들은 장애와 부적응성을 띠게 되어 외부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대처를 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犯罪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¹⁰⁾

(2) 成熟理論

이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심리적, 생리적, 생화학적으로 일정 수준만큼 성숙하면 자재력이 형성되고 스스로 犯罪을 중단하게 된다고 하여 靑少年犯罪에 관하여 심리적 조건의 성숙을 강조한다.

Henry H. Goddard는 지능상태와 범죄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정신적으로 미성숙된 상태에 있는 靑少年에게는 판단력과 자기통제력의 결여 및 신경질적 기질 등으로 非行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는 저지능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¹¹⁾

7) 姜珍復, "靑少年非行의 發生原因과 豫防對策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檀國大學校 教育大學院, 1990, p.18.

8) 鄭元植·李相魯·李星珍, 「現代教育學 心理」, 教育出版社, 1988, pp.315-317.

9) 慎鎮揆, 前掲書, p.365.

10) 姜珍復, 前掲論文, p.19.

11) H. H. Goddard, *Human Efficiency and Levels of Intelligence*(Princeton univ, 1920), pp.72-74, 上掲論文 p.20에서 재인용.

(3) 發達心理學的 理論

이 이론에서 대표적인 욕구좌절-공격이론은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좌절감을 갖게 되며 이때 좌절감을 준 당사자나 대치물에 대하여 공격적인 행동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犯罪少年은 의지가 약하며 싸움에 말려들기 쉽고 반항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서 犯罪를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고 한다.¹²⁾

(4) 精神病患論

이는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인 특징을 가진 정신병환적 성격은 犯罪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론이다. 정신병환적 성격의 소유자는 자신의 본능적 충동과 욕구를 통제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으며 판단력이 약하고 비협조적이며 쾌락과 변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때문에 정신병환의 소유자에 의한 犯罪는 구체적으로 미리 계획됨이 없이 행해지며 또한 無目的的이다.¹³⁾

3) 社會學的 原因論

靑少年犯罪의 사회학적 고찰은 靑少年犯罪의 原因을 社會·文化的 측면에서 파악하려는 실증적 입장이다. 오늘날의 靑少年犯罪의 原因은 生物學的, 心理學的 특성보다는 社會學的 조건의 結여에 있다고 보아진다. 靑少年非行과 犯罪原因에 관한 社會學的 理論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노미론

아노미란 원래 無規範(normlessness)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노미를 사회학적 술어로써 최초로 사용한 학자는 E. Durkheim이다. 그에 따르면 아노미는 사회 및 집단에 있어서 상대적인 無規範 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規範의 不在를 뜻하는

12) 李爽鎬, “靑少年非行의 環境的 原因分析과 豫防對策”, 碩士學位論文, 朝鮮大學校 大學院, 1989, pp.11-12.

13) 上揭論文, p. 12.

것이 아니고 사회 체계의 구성원 다수가 規範과의 동일화 의식이 약화되어 그 정당성이 상실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며 아노미는 바로 이러한 규범적 질서의 규제력의 결여 또는 와해에서 나타난다고 한다.¹⁴⁾ 한편 E. Durkheim은 규범적 질서의 붕괴 내지 규범적 통제의 결여에서 아노미가 일어난다고 보는 반면 R. K. Merton은 아노미의 원인을 文化的 目標(부의 획득, 금전적 성공)와 制度化된 手段(사회규범)간의 不一致에 있다고 한다.¹⁵⁾

R. K. Merton의 이론에 의하면 文化的 目標의 실현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적 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개인 또는 계층은 자연히 社會적으로 우상화 되고 個人的으로 내면화된 문화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비록 違法的이지만 技術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게 된다. 즉 文化的 目標가 일률적으로 강조되면서 그러한 수단에 접근하기 힘든 하류계층이 탈선의 유혹을 가장 많이 받게 된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모든 조건하에서 항상 非行率이 높은 것만은 아니다.¹⁶⁾

아노미 이론은 文化的 目標과 制度化된 手段간의 괴리 현상에서 각 개인마다 적응양식이 다른 이른바 차별적 반응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즉 아노미적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동조적인데 반해 또 다른 사람들은 탈선적인 반응을 나타내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구조적 긴장이 극소화 되어 있는 상류계층의 탈선행위에 관해서도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2) 非行下位 文化論

개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역할이 非行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는 Merton에 비해 Cohen은 社會階級과 非行行爲 사이에 價値觀이라는 모개 변수를

14) 상세한 것은 表甲洙, 「靑少年非行原因理論」, 韓國福祉政策研究所 出版部, 1986, pp. 11-12를 참조하기 바람.

15) R. K. Merton, "Anomie and Social structure", in E. Rubington and M. S. Weinberg, *The Study of Social Problem*, Oxford Univ. Press, N. Y. 1977, pp. 151-152, 上掲書에서 재인용.

16) 表甲洙, 上掲書, pp. 13-14.

도입하여 社會階層은 價値觀의 모개를 통하여 非行行爲와 연결된다고 본다. 또한 사회에는 각계 각층의 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文化가 있는데 중산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심 문화와 하류계급인 노동자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간에는 중대한 葛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¹⁷⁾

中産階層의 특징적인 가치 기준을 보면 ① 추진력과 야망 ② 개인의 책임성 ③ 직장, 학교에서의 성취와 성공 ④ 물리적 공격과 폭력의 통제 ⑤ 타인의 재산 존중 ⑥ 대인관계에서의 예의 범절의 함양과 자아 통제 ⑦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의 합리성 ⑧ 건전한 오락의 활용 ⑨ 미래의 이익에 대한 욕구달성을 위한 즉흥적 만족의 억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中産階級의 價値觀의 전달은 학교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下流階級의 少年들은 어려서부터 받아 온 계급 차이적인 社會化 양식 때문에 이들 中産階級 기준에 동조할 수 있는 능력과 이들 기준에 의해 측정될 수 있는 지위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하류 출신의 자녀들은 중산계급 위주의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 여러가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社會構造的으로 조성된 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下流階級의 少年 나뉠대로의 사회 즉 지위와 사회적 인정, 자아존중의 새로운 기준에 바탕을 둔 非行集團을 형성하게 된다. 非行集團과 이 集團에 특유한 非行下位文化는 이들 적응 문제에 대한 하류계급 소년들의 집합적 해결이라는 것이 Cohen의 핵심 이론이다.¹⁸⁾

비행집단의 非行下位文化는 다음과 같은 特質을 가지고 있다. 첫째, 非功利性 non-utilitarianism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오락적 성격을 띠는 '드릴'과 흥미 때문에 흠치는 것이다. 둘째, 惡意性 maliciousness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금기를 파괴하는 행위 자체를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17) 尹德重, 「犯罪와 少年 非行學」, 博英社, 1989, pp. 244-245.

18) 表甲洙, 前掲書, pp. 19-20.

것으로 성인사회, 非개적인 同年輩 및 중산계급의 문화와 상징에 대한 적대 행위를 말한다. 세째, 不正性 negativistic으로 성인사회의 文化에 정반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一般文化의 規範에 비추어 나쁜 것은 무엇이든지 非行下位文化의 기준에 의해서 옳다는 것이다.¹⁹⁾ 요컨대 非行下位文化는 중산계급의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구조하에서 하류계급의 소년들이 당면한 지위적 욕구 저지와 자존심 훼손이라는 문제들을 집단적으로 해결하려는 反動形成的 所産을 말한다. 그러나 이 理論은 중산계급의 非行을 설명하지 못하며 또한 하류계급의 소년들 중에서도 非行에 참가하지 않는 靑少年들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²⁰⁾

(3) 下位階級文化論

W. B. Miller은 下位文化의 非行은 中産階級の 價値觀을 거부하는 데서 유래한다는 Cohen의 이론과는 달리 下流階級の 少年들은 그들 階級の 價値觀에 동조함으로써 非行少年이 된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도시의 하류계급 주거지역의 집단적인 非行은 그러한 지역에 고유한 가치와 행동양식인 독특한 문화적 전통이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다.

下流階級の 集團의 非行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은 下流階級내에서의 社會化過程을 겪으면서 습득한 下流階級 文化 또는 關心의 集點²¹⁾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이다.²²⁾

W. B. Miller는 非行少年의 발생에 있어 家庭의 役割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즉 여성이 가장인 家庭은 아버지가 없어 여성이 부, 모 양자의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 성장하는 靑少年은 性的 모델의 동일화

19) 尹德重, 前掲書, pp. 246-247.

20) 表甲洙, 前掲書, pp. 19-20.

21) 關心의 集點이라고도 하는데 이를 이루는 6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尹德重, 前掲書, pp. 249-250 참조.

22) 表甲洙, 前掲書, p. 27.

과정에서 남성역할의 모델을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가구의 靑少年들은 성인적 지위를 획득하는데 요구되는 남성역할의 동일화 모델을 가족외적 집단인 가두의 非行集團에서 찾게 된다.²³⁾ 그러므로 家庭의 役割이 올바르게 수행되지 못할 때에 靑少年들은 犯罪와 非行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4) 接觸差異論

Sutherland의 接觸差異論은 접촉 차이와 사회조직 차이라는 개념으로 구성된다. 前者는 法律이나 規範에 대한 違反을 긍정하는 태도가 지나치기 때문에 非行行爲를 하게 된다는 것으로 他人과의 접촉을 통해 非行의 동기, 태도 및 기술을 학습한다는 것이다. 한편 社會組織 差異는 사회적 배경이 非行行爲를 하는데 도움이 되든 안되든 간에 모든 사회적 배경 그 자체에는 일정한 조직이 존재하며 다만 이들은 서로 다른 목표와 수단을 지향하기 때문에 달리 조직이 되어 있고 그 조직의 차이는 非行的 規範과 價値의 存在 有無와 관련이 있다.²⁴⁾

이러한 Sutherland의 接觸差異論의 核心은 어느 개인이나 非行行爲에 대한 정의가 遵法行爲에 대한 정의 보다 유리하게 내려질 때 非行行爲를 하게 된다는 것이며 그 非行은 사회구조적 조건이 아닌 사회적 학습의 결과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즉 非行은 유전되거나 행위자에 의해 고안되거나 발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接觸差異論은 동일한 非行文化와 접촉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非行者가 되고 어떤 사람은 非行者가 되지 않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5) 統制理論

이 이론은 최근에 대두된 것으로 기존의 理論들을 근원적으로 재평가하고 새로운

23) D. J. Shoemaker, *Theories of Delinquency: An Examination of Explanations of Delinquent Behavior*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84), p.121.

24) 表甲殊, 前掲書, p. 31.

방향을 모색한 이론이다. 이 이론은 Richard Quinney, Travis, Hirsch 등의 학자가 주장한 것으로 사회통제이론, 반응론, 낙인론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犯罪와 非行을 예방하려는 사회통제적 과정이 역으로 犯罪를 유발시키고 지속시킨다고 한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원인적 규명보다는 범죄행위를 한 자가 계속 범죄행위를 하느냐 하는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²⁵⁾

4) 諸理論의 檢討

靑少年犯罪의 原因은 어느 하나만의 理論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위의 生物學的, 心理學的, 社會學的 理論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중 개인의 신체적 특질을 중시하는 生物學的 原因은 어느 정도 犯罪의 발생 원인이 될 수는 있겠으나 반드시 犯罪의 유발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오늘날에는 社會學的 原因들이 靑少年犯罪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본다. 또한 社會學的 理論들을 보면 대부분이 상류층과 하류층 사이의 문화적 차이에 의해 주로 下流層 靑少年들이 犯罪를 저지른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날과 같은 산업사회에서는 犯罪의 원인도 心理的·相對的인 빈곤 감정에 의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靑少年 犯罪原因을 밝히는데 있어서는 理論的 側面보다는 사회전반에 걸친 實質的인 側面을 중시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25) 姜珍復, 前揭論文, p. 17.

Ⅲ. 靑少年 犯罪의 現況

1. 靑少年 犯罪의 實態分析

靑少年 犯罪의 原因을 糾明하고 그에 대한 豫防對策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靑少年犯罪의 現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최근 10년간(1982-1991)에 걸친 靑少年犯罪의 實態를 살펴보고자 한다.

1) 全體 動向

〈表 1〉에서 볼 수 있듯이 靑少年 犯罪者는 1982년에 106,301명이었던 것이 1983년에는 103,088명으로 前年度에 비해 3.1% 감소하였고, 1984년에는 104,578명으로 1.4% 증가하였고, 1985년에는 다시 2.2% 감소하였다. 1986년에는 0.4% 증가하였고 1987년에는 다시 前年度에 비해 8.0% 감소하였으며, 1988년에는 6.3% 1989년에는 3.7% 증가하였고 1990년에는 2.2% 감소하였고 1991년에는 2.7% 감소하였다.

〈表 1〉 總犯罪比 靑少年犯罪 構成比

單位：名

구 분	총 범 죄	靑少年 범죄	구 성 비
1982	860,752	106,301	12.3
1983	932,788	103,088	11.1
1984	1,000,343	104,578	10.5
1985	1,005,892	102,225	10.2
1986	1,041,887	106,355	10.2
1987	1,113,612	97,849	8.8
1988	1,144,802	104,052	9.1
1989	1,337,587	108,015	8.1
1990	1,402,417	105,567	7.5
1991	1,540,914	102,537	6.7

자료：체육靑少年부, 「靑少年 백서」, 1990-1992.

여기서 볼 수 있듯이 靑少年 犯罪는 일률적으로 증가해 온 것이 아니라 1982년에서 1986년까지는 뚜렷한 추세없이 증가, 감소를 되풀이 하다가 1987년에서 1989년까지는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다시 1990, 1991년에는 감소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少年 成人別 動向

〈表 2〉는 1982년 이래의 소년 형법범의 발생 추이를 성인과 대비한 것이다.

〈表 2〉 少年 成人別 刑法犯 人員 및 人口比

單位：名

년 도	소년			성 인	
	인 원	소년 비	인 구 비	인 원	인 구 비
1982	99,382 (100)	19.1	140.8	421,195 (100)	190.5
1983	93,365 (94)	18.1	131.7	426,208 (101)	186.9
1984	90,569 (91)	17.2	126.7	451,479 (107)	192.3
1985	88,298 (89)	16.8	122.8	438,016 (104)	181.8
1986	89,206 (90)	16.7	123.7	444,029 (105)	179.8
1987	80,025 (81)	14.9	111.4	456,011 (108)	180.2
1988	80,641 (81)	16.1	113.5	419,444 (100)	161.8
1989	85,428 (86)	18.1	122.5	386,503 (92)	145.5
1990	82,446 (83)	14.8	115.5	475,921 (113)	170.0
1991	72,413 (73)	12.4	108.9	512,710 (122)	183.1

- * 1. 범죄분석, 한국통계연람(통계청추계인구에 의함)
- 2. 소년인구비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인구 10,000명당 범죄자 수를 말하고, 성인인구비는 20세 이상의 성인인구 10,000명당 범죄자 수를 말함.
- 3. 소년비는 $\frac{\text{소년범}}{\text{소년범} + \text{성인범}} \times 100$ 임
- 4.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범도 포함
- 5. ()은 지수

자료: 체육청소년부, 「청소년 백서」, 1990-1992.

전체 刑法犯중 少年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대체로 12%-19%의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1991년에는 12.4%의 비율을 보였다. 12세 이상 20세 미만에 해당하는 인구 10,000명당의 범죄자 수를 보면 1982년 이후 계속 108명을 넘고 있으며 1982년의 140.8명을 정점으로 하여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1990년의 인구비는 115.5명이고 1991년에는 108.9명으로 전년도 보다 감소하였다.

1982년과 1991년을 비교해 보면 成人 刑法犯은 21.7%가 증가 하였으나 少年 刑法犯은 27.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年齡層別 動向

〈表 3〉은 少年 刑法犯 年齡層別 人員數와 人口比를 나타낸 것이다.

연령층별로 10년간의 증감 현황을 보면 14세 미만은 1982년의 6,068명에서 1991년에는 1,738명으로 71.4%, 14세-15세는 17,032명에서 14,297명으로 16.1%, 16세-17세는 33,691명에서 24,444명으로 27.4%, 18세-19세는 42,591명에서 31,934명으로 25.0%감소 하였다.

구성비를 보면 1982년에는 14세미만이 6.1%, 14세-15세가 17.1%, 16세-17세가 33.9%, 18세-19세가 42.9%였으나 1991년에는 14세 미만이 2.4%, 14세-15세가 19.7%, 16세-17세가 33.8%, 18세-19세가 44.1%로서 14세미만의 비율이 작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비를 보면 1991년의 경우 14세미만이 5.1명, 14세-15세가 41.6명, 16세-17세가 71.1명, 18세-19세가 92.9명으로 전체적으로 1990년에 비하여 15세 이하는 높아지고 16세 이상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少年 刑法犯 年齡層別 人口比 구성에 있어서 14세 미만이 1987, 1988, 1989년의 일시적인 증가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는 바 이는 14세 미만 어린이에 의한 竊盜 등 犯罪가 현저히 감소된 점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表 3〉 少年 刑法犯 年齡層別 現況

單位：名

年 度	계	14세 미만		14세-15세		16세-17세		18-19세	
		인 원	인구비	인 원	인구비	인 원	인구비	인 원	인구비
1982	99,382	6,048	32.8	17,032	98.0	33,691	197.2	42,591	241.2
1983	93,365	5,402	28.8	17,267	96.4	31,752	186.1	38,944	226.4
1984	90,569	2,073	11.1	16,352	88.9	30,826	177.8	41,318	243.4
1985	88,298	1,435	7.8	15,306	81.9	31,254	175.6	40,303	237.2
1986	89,206	1,335	7.5	15,328	82.0	30,780	168.1	41,763	241.8
1987	80,025	1,637	9.6	13,441	73.2	26,581	142.5	38,366	216.2
1988	80,641	1,515	9.3	12,769	71.8	26,014	139.5	40,343	220.8
1989	85,428	1,551	9.8	14,185	83.4	27,638	151.0	42,054	226.1
1990	82,446	1,684	4.6	14,705	40.2	28,627	78.3	37,430	102.4
1991	72,413	1,738	5.1	14,297	41.6	24,444	71.1	31,934	92.9

* 인구비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인구 10,000명당 범죄자 수를 말함
 자료: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1990-1992.

4) 犯罪 類型別 現況

犯罪 類型別 추세를 <表 4>에서 보면 1987년에는 暴行, 傷害, 恐喝 등 暴力犯이 43.5%, 竊盜, 橫領, 詐欺 등 財産犯이 32.1%, 殺人, 強盜, 強姦 등 強力犯이 4.3%로 나타나고 있다. 強力犯 중 殺人은 1982년도에 비해 20.4%, 強盜는 5.2% 증가하였으나 強姦은 41.1% 감소하였다. 暴力犯 중 暴行은 1982년도에 비해 12.3% 감소하였고 傷害는 24.9%로 감소하였다.

1991년에는 暴行, 傷害, 恐喝 등 暴力犯이 40.3% 竊盜, 橫領, 詐欺 등 財産犯이 24.6% 殺人, 強盜, 強姦 등 強力犯이 3.5%로 나타나고 있는데 1987년에 비해 強力犯 중 殺人은 17.0%, 強盜는 13.4% 증가하였으나 強姦은 43.8% 감소하였다. 그리고 暴力犯 중 暴行은 14.4% 傷害는 33.7%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強盜, 暴行, 竊盜가 전체 소년범죄 중 1990년에는 3.16%, 45.2%, 21.4%를 차지하였고 1991년에는 2.16%, 38.7%, 21.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少年犯罪가 흉폭하고 조폭화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財産犯은 1983년부터 매년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表 4〉 青少年犯罪 類型別 現況

單位：名

구 분	1982	1984	1985	1987	1988	1989	1990	1991	
계	106,301	104,578	102,225	97,849	104,322	108,015	105,415	103,376	
강 력 범	소 계	5,663	5,482	5,692	4,195	4,771	5,588	6,261	3,568
	살 인	93	79	89	112	138	109	160	93
	강 도	1,875	2,010	2,287	1,973	2,529	3,000	3,334	2,238
	강 간	3,642	3,342	3,268	2,073	2,036	2,427	2,675	1,165
	방 화	53	51	51	37	68	52	92	72
폭 력 범	소 계	48,771	46,713	46,341	42,585	45,120	50,757	49,088	41,337
	폭 행	46,829	44,898	44,556	41,067	43,567	49,156	47,709	40,056
	상 해	1,611	1,483	1,454	1,209	1,281	1,330	1,119	1,076
	공 갈	301	315	311	291	239	251	247	197
	협 박	30	17	20	18	33	20	13	8
재 산 범	소 계	38,935	35,260	33,926	31,391	28,587	26,893	25,255	25,251
	결 도	36,183	31,834	30,568	28,241	25,101	24,097	22,663	22,432
	횡 령	611	731	685	650	768	691	647	706
	작 물	1,192	922	825	656	606	626	653	695
	사 기	949	1,773	1,848	1,844	2,112	1,479	1,292	1,418
기 타	12,932	17,123	16,266	19,678	25,574	24,777	24,811	32,381	

자료：체육청소년부, 「청소년백서」, 1990-1992.

5) 動機別 現況

〈表 5〉에서 보듯이 1991년의 少年犯罪者의 犯行動機를 보면 우연이 27.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이욕이 9.8%, 취중이 7.7%를 차지하고 있다. 우연한 犯行이나 遊興費 마련 등을 위한 犯行이 1983년부터 전체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보아 靑少年들이 뚜렷한 價値觀이 없이 향락위주의 생활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오늘날 큰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6) 職業別 犯罪現況

〈表 6〉은 少年 犯罪者의 職業別 構成比를 나타낸 것이다.

1991년의 경우 무직이 28.5%, 학생이 37.0%, 종업원이 10.3%, 직공이 4.3%를 차지하고 있는데 1990년에 비하여 직공의 비율이 낮아지고 학생이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表中에서 보듯이 1982년 부터 1986년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던 學生犯罪가 한 때 1987년에는 29.9%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보이는데 이는 학교에서 정학, 퇴학을 당하거나 성적불량, 좋지 않은 교우관계, 입시위주의 교육 등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

7) 教育程度別 現況

〈表 7〉에서 보듯이 국민학교 졸업 이하의 구성비는 해마다 급격히 감소하여 1982년에는 19.2%나 되던 것이 1991년에는 4.8%에 불과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이상의 비율은 1986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증가하여 1982년에 40.2%이던 것이 1991년에는 56.5%에 달하고 있는바 이러한 현상은 높은 교육열로 인한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향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表 5〉 靑少年犯罪의 動機別 現況

單位：名

년 도	계	이 욕	사행심	원한분노	취 중	우 연	유 혹	가정불화	기 타
1982	106,249 (100)	17,071 (16.1)	2,742 (2.6)	5,000 (4.7)	6,843 (6.4)	13,288 (12.5)	1,814 (1.7)	278 (0.3)	59,213 (55.7)
1983	103,025 (100)	21,008 (20.4)	3,349 (3.3)	5,268 (5.1)	7,738 (7.5)	23,893 (23.2)	2,206 (2.1)	246 (0.2)	39,317 (38.2)
1984	104,476 (100)	20,092 (19.2)	3,416 (3.3)	5,825 (5.6)	7,080 (6.8)	24,634 (23.6)	2,028 (1.9)	255 (0.2)	41,146 (39.4)
1985	102,038 (100)	18,090 (17.7)	3,219 (3.1)	5,519 (5.4)	5,994 (5.9)	24,891 (24.4)	1,886 (1.9)	214 (0.2)	42,225 (41.4)
1986	106,115 (100)	17,702 (16.7)	2,807 (2.6)	4,919 (4.6)	6,236 (5.9)	24,337 (22.9)	1,704 (1.6)	194 (0.2)	48,216 (45.4)
1987	97,675 (100)	15,979 (15.1)	2,635 (2.7)	4,588 (4.7)	6,289 (6.4)	20,645 (21.1)	1,304 (1.3)	149 (0.2)	46,086 (47.2)
1988	103,760 (100)	14,079 (13.6)	2,699 (2.6)	5,097 (4.9)	7,082 (6.8)	28,043 (27.0)	1,551 (1.5)	172 (0.2)	45,037 (43.4)
1989	107,819 (100)	13,796 (12.8)	3,088 (2.9)	5,021 (4.7)	7,890 (7.3)	33,703 (31.3)	1,884 (1.7)	151 (0.1)	42,286 (39.2)
1990	105,364 (100)	13,442 (12.8)	2,755 (2.6)	3,872 (3.7)	7,683 (7.3)	35,065 (33.3)	1,852 (1.8)	151 (0.1)	40,544 (38.5)
1991	102,324 (100)	10,060 (9.8)	1,909 (1.9)	3,012 (2.9)	7,864 (7.7)	27,687 (27.1)	2,081 (2.0)	149 (0.1)	49,562 (48.4)

- * 1. 군인범죄자 제외.
 - 2. 이욕중에는 생활비, 유흥비, 사치심 포함.
 - 3. ()은 계에 대한 구성비임.
- 자료 : 체육청소년부, 「청소년백서」, 1990-1992.

〈表 6〉 青少年 犯罪者의 職業別 現況

單位：名

년 도	계	무 직	학 생	농 업	직 공	노 동	종업원	기 타
1982	106,246 (100)	37,013 (35.7)	35,013 (33.0)	3,717 (3.5)	6,616 (6.2)	2,424 (2.3)	8,284 (7.8)	12,225 (11.5)
1983	103,030 (100)	34,861 (33.8)	35,041 (34.0)	2,826 (2.8)	6,569 (6.4)	2,668 (2.6)	8,483 (8.2)	12,580 (12.2)
1984	104,450 (100)	35,493 (34.0)	33,144 (31.7)	2,411 (2.3)	6,497 (6.2)	2,981 (2.9)	8,301 (7.9)	15,623 (15.0)
1985	101,997 (100)	37,344 (36.6)	31,987 (31.3)	2,027 (2.0)	5,371 (5.3)	2,595 (2.5)	7,665 (7.5)	15,158 (14.8)
1986	106,081 (100)	36,181 (34.1)	33,219 (31.3)	1,824 (1.7)	5,839 (5.5)	2,359 (2.2)	8,006 (7.5)	18,653 (18.3)
1987	97,660 (100)	32,539 (33.3)	29,254 (29.9)	1,378 (1.4)	6,014 (6.2)	2,278 (2.3)	8,253 (8.5)	17,944 (18.4)
1988	103,736 (100)	31,394 (30.3)	30,628 (29.3)	1,249 (1.2)	5,838 (5.6)	2,512 (2.4)	9,378 (9.0)	22,737 (21.9)
1989	108,015 (100)	30,630 (28.4)	36,720 (34.0)	1,132 (1.0)	5,587 (5.2)	2,495 (2.3)	10,576 (9.8)	20,875 (19.3)
1990	105,567 (100)	29,853 (28.3)	37,918 (35.9)	912 (0.9)	4,997 (4.7)	2,904 (2.8)	10,597 (10.0)	18,386 (17.4)
1991	102,537 (100)	29,235 (28.5)	37,934 (37.0)	750 (0.7)	4,453 (4.3)	3,269 (3.2)	10,541 (10.2)	16,355 (16.0)

자료：1. 법무연수원, 「범죄 백서」, 1990-1992.

2. ()안은 계에 대한 구성비임.

〈表 7〉 靑少年 犯罪者의 教育程度別 現況

單位：名

年 度	계	불 취 학	국민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대 학 교	기 타
1982	106,301 (100)	768 (0.7)	19,621 (18.5)	36,222 (34.1)	39,806 (37.4)	2,962 (2.8)	6,922 (6.5)
1983	103,088 (100)	723 (0.7)	17,537 (17.0)	34,970 (33.9)	40,464 (39.3)	3,385 (3.3)	6,009 (5.8)
1984	104,578 (100)	794 (0.8)	13,314 (12.7)	34,623 (33.1)	42,609 (40.7)	3,690 (3.5)	9,548 (9.1)
1985	102,225 (100)	660 (0.6)	11,548 (11.3)	33,049 (32.3)	43,492 (42.5)	3,729 (3.6)	9,747 (9.5)
1986	106,355 (100)	556 (0.5)	8,347 (7.8)	33,523 (31.5)	44,066 (41.4)	3,735 (3.5)	16,128 (15.1)
1987	97,849 (100)	441 (0.5)	6,353 (6.5)	30,427 (31.1)	42,242 (43.1)	3,608 (3.7)	14,778 (15.1)
1988	104,052 (100)	468 (0.4)	5,986 (5.8)	30,321 (29.1)	46,140 (44.3)	4,141 (4.0)	16,996 (16.3)
1989	108,015 (100)	454 (0.4)	5,766 (5.3)	31,872 (29.5)	52,033 (48.2)	4,368 (4.1)	13,522 (12.5)
1990	105,567 (100)	353 (0.3)	4,946 (4.7)	31,325 (29.7)	53,735 (50.9)	4,057 (3.8)	11,151 (10.0)
1991	102,537 (100)	327 (0.3)	4,571 (4.5)	30,260 (29.5)	54,270 (52.9)	3,708 (3.6)	9,401 (9.2)

* 1. 공민 학교, 전수학교, 전문학교 및 초급대학 등은 각 정규학제 해당학교에 포함되었음

2. ()은 계에 대한 구성비임.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1990-1992.

8) 生活程度別 現況

〈表 8〉에서 보듯이 최근 10년간의 靑少年 犯罪者의 生活程度別 現況을 보면 큰 변동은 없는 듯하다.

1987년과 1991년을 비교하여 보면 하류가 88.7%에서 81.7%로 그 구성비가 낮아진 반면 중류가 10.8%에서 17.2%, 상류는 0.5%에서 1.1%로 높아졌다.

이렇듯 최근 5년간 중류의 비율이 높아지고 하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 동안의 국민생활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중상류계층의 청소년들의 향락위주의 생활에 젖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9) 家族關係別 現況

〈表 9〉는 靑少年 犯罪者중 미혼인 자들의 家族關係別 現況을 나타낸 것으로 1991년의 경우 實父母의 비율이 83.5%, 偏父가 4.3%, 偏母가 9.4%, 無父母가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성 비율은 약간의 增減이 있기는 하지만 매년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성비에 나타난 바와 같이 實父母를 가진 소년의 비율이 항상 80% 내외에 있음에 비추어 缺損家庭이 少年犯罪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少年犯罪者 중 기혼자의 비율을 보면 1983년이 3.0%, 1984년이 5.4%, 1985년이 8.1%, 1986년이 14.8%, 1987년이 14.5%, 1988년이 19.1%로서 점차 그 비율이 증가하다가 1989년에는 8.2%, 1990년에는 6.6%로 감소 하였으나 1991년에는 7.1%로 약간 증가 하였다.

10) 前科別 現況

〈表 10〉은 최근 10년간의 少年犯의 前科現況을 나타낸 것이다. 1982년의 경우 85.4%가 初犯이고 17.6%가 再犯이었으나 1991년에는 初犯은 76.8%로 감소한 반면 再犯은 23.0%로 크게 증가 하였다.

이렇듯 靑少年 犯罪者의 再犯率이 높아지는 이유로는 첫째, 靑少年 犯罪者를 효율적으로 교정, 교화시키지 못하는 점을 들 수 있고 둘째, 사회 각계 각층에서 少年犯罪者들이 前科者로 낙인 찍혀서 사회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다.

〈表 8〉 靑少年 犯罪者의 生活程度別 現況

單位：名

년 도	계	하 류	중 류	상 류
1982 (100)	106,301 (89.2)	94,813 (10.4)	11,085 (0.4)	403
1983	103,088 (100)	90,787 (88.1)	11,876 (11.5)	425 (0.4)
1984	104,578 (100)	92,565 (88.5)	11,483 (11.0)	530 (0.5)
1985	102,225 (100)	91,559 (89.6)	10,192 (9.9)	474 (0.5)
1986	106,355 (100)	94,336 (88.7)	11,260 (10.6)	759 (0.7)
1987	97,849 (100)	86,788 (88.7)	10,615 (10.8)	446 (0.5)
1988	104,052 (100)	90,607 (87.1)	12,883 (12.4)	562 (0.5)
1989	108,015 (100)	92,721 (85.8)	14,714 (13.6)	580 (0.6)
1990	105,567 (100)	87,315 (82.7)	17,668 (16.7)	584 (0.6)
1991	102,537 (100)	83,801 (81.7)	17,661 (17.2)	1,075 (1.1)

자료 : 1.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1990-1992.

2. ()은 계에 대한 구성비임.

〈表 9〉 青少年 犯罪者의 家族關係別 現況

單位：名

年 度	계	실 부모	편 부	편 모	무 부모
1982	103,882 (100)	84,047 (81.0)	4,137 (4.0)	12,088 (11.0)	3,610 (4.0)
1983	100,979 (100)	80,696 (80.8)	3,991 (3.9)	12,017 (12.1)	3,277 (3.2)
1984	98,955 (100)	80,016 (80.9)	3,899 (3.9)	11,786 (11.9)	3,254 (3.3)
1985	93,962 (100)	76,559 (81.5)	3,767 (4.0)	10,607 (11.3)	3,029 (3.2)
1986	90,650 (100)	73,124 (80.6)	3,852 (4.2)	10,254 (11.3)	3,420 (3.9)
1987	83,613 (100)	67,645 (80.9)	3,709 (4.4)	9,611 (11.5)	2,648 (3.2)
1988	84,209 (100)	66,854 (79.4)	3,727 (4.4)	10,511 (12.5)	3,077 (3.7)
1989	99,189 (100)	80,330 (80.9)	3,982 (4.0)	10,685 (10.8)	4,192 (4.3)
1990	98,636 (100)	77,989 (79.1)	4,241 (4.3)	11,331 (11.5)	5,075 (5.1)
1991	95,231 (100)	79,548 (83.5)	4,065 (4.3)	8,907 (9.4)	2,711 (2.8)

* 1. 偏父는 實父繼母, 實父無母를 偏母는 實父繼父, 實母無父를 無父母는 繼父母, 繼父無母, 繼母無父, 無父母를 말함.

2. 기혼자는 제외

3. ()은 계에 대한 구성비임.

자료: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1990-1992.

〈表 10〉 靑少年 犯罪者의 前科別 現況

單位：名

年 度	계	초 범	전 과			
			소 계	1 범	2 범	3범이상
1982	106,301 (100)	90,779 (85.4)	15,522 (17.6)	10,628 (11.2)	3,156 (4.0)	1,738 (2.4)
1983	103,088 (100)	84,953 (82.4)	18,135 (17.6)	11,572 (11.2)	4,093 (4.0)	2,470 (2.4)
1984	104,578 (100)	83,568 (79.9)	21,010 (20.1)	12,515 (12.0)	4,857 (4.6)	3,638 (3.5)
1985	102,225 (100)	80,819 (79.1)	21,409 (20.9)	12,000 (11.7)	5,038 (4.9)	4,368 (4.3)
1986	106,355 (100)	84,952 (79.9)	21,403 (20.1)	11,845 (11.1)	4,903 (4.6)	4,655 (4.4)
1987	97,849 (100)	77,463 (79.2)	20,386 (20.8)	11,251 (11.5)	4,732 (4.8)	4,403 (4.5)
1988	104,052 (100)	81,405 (78.2)	22,647 (21.8)	12,203 (11.7)	5,247 (5.0)	5,197 (5.1)
1989	108,015 (100)	84,011 (77.8)	24,004 (22.1)	12,921 (12.0)	5,473 (5.1)	5,610 (5.1)
1990	105,567 (100)	81,896 (77.6)	23,671 (22.4)	13,040 (12.4)	5,446 (5.2)	5,185 (4.8)
1991	102,537 (100)	78,749 (76.8)	23,788 (23.0)	13,342 (13.0)	5,364 (5.2)	5,082 (5.0)

자료 : 1.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1990-1992.

2. ()은 계에 대한 구성비임.

2. 靑少年 犯罪의 特徵

靑少年犯罪의 실태분석 결과(〈表 1〉-〈表 10〉)를 토대로 하여 靑少年犯罪의 特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量的 變化

먼저 전국 범죄발생 상황을 보면 〈表 1〉에 의할 때 1982년의 860,752명에서 1991년에는 1,540,914명으로 44.1% 증가 하였으나 少年犯罪은 1982년의 106,301에서 1991년에는 102,537명으로 3.5%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성비에 있어서도 1982년에는 全體犯罪의 12.3%가 少年犯罪였으나 1991년에는 6.7%에 그치고 있다.

다음은 지난 10여년간의 靑少年犯罪의 증가율을 〈表 2〉를 참조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表에서 보았듯이 靑少年犯罪은 1982년 이후부터 1987년까지는 대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988년과 1989년에는 증가의 경향을 보이나 다시 1990, 1991년에는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82년과 1991년의 인구비 변화추세를 보면 成人犯의 경우 7.4%가 감소하였고 少年犯은 같은 기간 중 31.9%가 감소하였다.

이렇듯 靑少年犯罪가 대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靑少年 인구가 예전보다 감소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아직도 靑少年犯罪은 量的인 면에서 크게 줄고 있지는 않다.

2) 質的 變化

靑少年 犯罪은 質的인 면에서 몇가지 특징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은 靑少年犯罪의 심각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가. 粗暴化 傾向

靑少年犯罪의 類型別 現況은 <表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에 竊盜犯이 22,432명, 暴行犯이 40,056명으로 靑少年 犯罪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靑少年犯罪가 粗暴化, 惡質化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集團化 傾向

靑少年犯罪는 단독으로 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이 그룹을 형성하여 犯罪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靑少年犯罪의 集團化 傾向은 청소년 자체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미성숙된 상태로서 社會的 弱者이기 때문에 集團化함으로써 그 능력을 발휘하여 目的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며, 심리적으로 靑少年期에는 그 스스로가 집단을 형성하고 집단에 가입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靑少年들은 그들의 욕구 불만을 약한 개인의 힘으로는 해소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집단을 이루어 집단적으로 행동하려는 태도를 취하게 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²⁶⁾

다. 低年齡化 傾向

<表 3>에서 보았듯이 1991년에는 10년전인 1982년 보다 14세-15세가 19.9%, 16세-17세가 37.8%, 18세-19세가 36.5%로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靑少年犯罪는 1983년이후 부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16세-17세, 18세-19세의 감소율에 비하면 14세-15세의 감소율이 19.9%에 그치는 것으로 보아 靑少年犯罪가 低年齡化 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靑少年犯罪의 低年齡化 傾向은 매스컴의 발달로 인하여 가속화되고 있으며 매스컴의 발달은 정립된 가치관을 가지지 못한 靑少年들에게 사회현상에 관한 그릇된 인식을 전해줄 수 있는 요소가 많다.

26) 朴哉昊, “靑少年犯罪의 生態的 原因과 對策”, 碩士學位論文,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1990, p. 24.

라. 都市 集中化 傾向

靑少年犯罪의 또 다른 특징인 中小都市, 혹은 農村地域 靑少年들이 大都市로의 전입현상에 의한 少年犯罪의 都市 集中化 現狀은 貧民街와 虞犯街가 여기저기 섞여 있고 고도의 인구이동, 밀집화된 불량주택 등이 산재되어 있는 빈민계층의 주거지역과 관련되어 나타나는데 이 지역은 非行을 유발하게 되는 일련의 가치와 문화적 양식이 산재하고 있어 靑少年의 非行發生率이 높은 것이다.²⁷⁾

大都市에 靑少年이 집중하게 되는 이유는 경제조건의 개선으로 인한 소비욕구의 상승, 기대수준의 고도화 현상과 인구 집중의 결과로 생기는 이해관계의 충돌, 개인주의와 비인격화 현상에 기인한 인간 소외화 현상, 이동성과 은닉성의 고도화, 산업오락과 자극에 의한 도덕의 혼란과 생활양식의 세속화 등과 같은 도시 사회의 구조적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마. 性犯罪 增加 傾向

靑少年에 의한 性犯罪는 1982년 이후 그 증가율이 둔화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靑少年에 의한 性犯罪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서구문명이 무분별하게 우리나라에 들어 오면서 서구의 성적자유 및 성개방 풍조가 함께 들어와 靑少年들의 의식구조와 성윤리관에 영향을 끼쳤고 성인위주의 각종 방송매체, 활자매체, 저속공연물 등 유해한 사회환경이 감수성이 예민한 靑少年들의 性犯罪를 촉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 여성들의 과다노출, 정조관념의 희박성 등도 靑少年의 성감정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²⁸⁾ 특히 최근의 강간행위는 면식이 있는 여자 친구를 유혹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히로뽕과 같은 각성제를 사용한 소년들이 환각상태에서 저질러지는 수도 적지 않다.²⁹⁾

27) 安慶太, “靑少年犯罪의 原因과 對策”, 碩士學位論文, 朝鮮大學校 大學院, 1989, p. 26.

28) 朴哉昊, 前揭論文, p. 26.

29) 孫演化, “靑少年非行에 관한 考察”, 「矯正」, 통권 181호(1991. 5), 矯正協會, p. 73.

이렇듯 靑少年들은 性에 대한 올바른 價値觀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건전한 性敎育의 기회도 제공받지 못하고 음란비디오, 성인만화 등을 자주 접하게 되므로 자신의 성적욕구를 승화시키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맹목적으로 성적 쾌락을 찾게 되어 性犯罪를 행하고 있는데, 더욱 놀랄만한 사실은 강간을 범하는 靑少年들이 대부분의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집단 강간의 형태로 犯罪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강간에 대한 책임을 여자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자신의 죄의식을 약화시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점이 두드러 진다는 것이다.³⁰⁾

바. 累犯化 傾向

累犯의 개념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구분되어 있다. 협의의 개념은 형법상의 누범을 지칭하는 것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의 면제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형법 제 35조). 그러나 광의의 의미의 누범은 재범과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범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少年 犯罪者의 경우 그 犯罪와 非行에 대해 원칙적으로 보호처분이 적용되므로 형법상의 누범 개념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여기서의 累犯은 대검찰청 범죄 통계를 이용하는 편의상·실무상의 累犯概念을 말한다고 하겠다.³¹⁾

〈표 10〉에서 보았듯이 靑少年 犯罪의 再犯率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靑少年들은 또래 집단을 형성하여 반복적인 犯罪를 저지르고 있는데 비해 그에 대한 社會對策은 미흡한 실정이어서 靑少年 犯罪의 再犯率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또한 靑少年 犯罪者에 대한

30) 최영신, "비행청소년의 일상생활과 범죄",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 5호(1991. 5. 6), 형사정책연구원, p. 11.

31) 權奉延, "靑少年犯罪의 特性과 敎化 善導 方案(上)", 「矯正」, 통권 제 197호(1992. 9.), 矯正協會, pp. 22-24.

行刑施設이나 保護觀察制度, 起訴猶豫制度 등 제반 제도들이 만족할 만하게 발전되어 오지 않은 점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다.

사. 學生犯罪의 增加現狀

〈表 1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學生犯罪은 少年犯罪 중 40-50%를 차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입시위주, 성적위주의 교육현실에 그 원인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表 11〉 學生犯罪의 動向

單位：名

년 도	전체범죄 (A)	소 년 범 죄		학 생 범 죄	
		인원 (B)	구성비 (B/A)	인원 (C)	구성비 (C/B)
1987	1, 113, 622	97, 849	8. 8	39, 939	40. 8
1988	1, 144, 802	104, 052	9. 1	42, 018	40. 4
1989	1, 337, 587	108, 015	8. 1	52, 409	48. 5
1990	1, 402, 417	105, 567	7. 5	55, 026	52. 1
1991	1, 540, 914	102, 537	6. 7	56, 496	55. 1

* 전체범죄에는 군인 범죄자 제외

자료 : 체육청소년부, 「청소년백서」, 1992.

학생범죄의 유형별 분포는 〈表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력사범이 37.8%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절도 23.7%, 흉악사범이 1.3% 순이다. 또한 학생범죄를 동기별로 보면 우연이 16,18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이욕 4,644명, 유혹이 2,237명의 순이다. 특히 이욕중에는 유혹비 조달이 2,783명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表 12> 學生犯罪의 類型別 動向

單位：名

년 도	계	폭력사범	절도사범	홍악사범	기 타
1987	39,939 (100)	17,459 (43.7)	12,245 (30.7)	506 (1.3)	9,729 (24.3)
1988	42,018 (100)	18,722 (44.6)	11,122 (26.5)	677 (1.6)	11,497 (27.4)
1989	52,409 (100)	23,879 (45.5)	12,096 (23.1)	937 (1.8)	15,497 (29.6)
1990	55,026 (100)	23,727 (43.1)	12,275 (22.3)	1,208 (2.2)	17,816 (32.4)
1991	56,497 (100)	21,333 (37.8)	13,410 (23.7)	756 (1.3)	20,997 (37.2)

자료：1. 체육청소년부, 「청소년백서」, 1992, p. 345.

2. ()은 계에 대한 구성비임.

<表 13> 學生犯罪의 動機別 動向

單位：名

	계	이 욕	사행심	원 한	가정불화	유 혹	우 연	기 타
1987	39,931	5,886	1,309	2,014	63	639	9,624	20,399
1988	42,011	5,186	1,384	2,398	79	754	12,967	19,243
1989	52,404	5,814	1,609	2,522	76	1,020	17,989	23,374
1990	55,024	5,915	1,614	1,971	70	1,033	18,937	25,484
1991	56,486	4,644	1,139	1,674	78	2,237	16,180	30,516

* 1. 군인 범죄자 제외.

2. 이욕에는 생활비, 유흥비, 허영, 사치심 포함.

자료：체육청소년부, 「청소년백서」, 1992, p. 346.

아. 麻藥類事犯의 增加現況 (약물 남용)

〈表 14〉에서 보듯이 靑少年 마약류사범은 1988년에 1,002명으로 최고정점을 이루었다가 1989년에 541명, 1990년에 512명, 1991년에 409명으로 계속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靑少年 마약류사범을 연령별로 보면 18세-19세와 20세-24세가 90% 이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14세-17세의 소년계층은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表 14〉 靑少年 麻藥類事犯 年齡別 現況

單位：名

년 도	14세-15세	16세-17세	18세-19세	20세-21세	계
1986	0 (0)	8 (4.0)	26 (13.0)	166 (83.0)	200 (100)
1987	0 (0)	16 (5.4)	61 (20.8)	217 (73.8)	294 (100)
1988	3 (0.3)	47 (4.7)	220 (22.0)	732 (73.0)	1,002 (100)
1989	1 (0.2)	24 (4.4)	115 (21.3)	401 (74.1)	541 (100)
1990	2 (0.4)	30 (5.9)	93 (18.1)	387 (75.6)	512 (100)
1991	0 (0)	14 (3.4)	87 (21.3)	308 (75.3)	409 (100)

자료 : 1. 체육청소년부, 「청소년백서」, 1990-1992.
2. ()은 계에 대한 구성비임.

마약류사범이 줄어 들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마약류는 인간의 정신을 황폐화 시키고 가정을 파괴하는 反理性的, 反社會的인 것으로 특히 인격형성단계에 있는 사춘기 靑少年과 학생에 의한 마약류 사용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 남용되는 약물에는 술·담배를 비롯하여 본드, 가스 등의 흡입제, 진정제, 환각제 등 실로 다양한 약물들이 있으며 흔히 술·담배 등은 일반적으로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술·담배야말로 靑少年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물질로써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절도, 강도,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靑少年들이 많다는 점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³²⁾

〈表 15〉에서 약물 사용실태를 보면 음주는 학생과 勤勞靑少年에게서 증가추세, 흡연은 勤勞靑少年에게서 증가추세, 각성제 흡입은 학생, 勤勞靑少年, 소년원생 모두에게서 현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마약, 히로뽕 등의 약물은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靑少年층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表 15〉 靑少年들의 藥物使用 趨勢

單位：名

종 류	학 생		근로靑少年		비행靑少年(범죄靑少年)	
	1989	1991	1989	1991	1989	1991
음 주	48	52.8	75	82.4	93.1	82.6
흡 연	33.1	29	28	36.4	96.1	86.6
각 성 제	29.7	6.6	37.3	3.6	34.8	6.8
본 드	4.4	2.5	6.7	3.6	47	45.9
대 마 초	1.9	0.8	1.7	1.5	28.5	6.9
진 정 제	5.9	1.8	7.3	2.5	25.4	8.2
마 약	0.7	0.6	0.9	0.6	9.4	7.2
히 로 뽕	0.7	0.4	1.4		9.6	5.6

자료：체육靑少年부, 「靑少年백서」, 1992.

32) 體育靑少年部, 「靑少年白書」, 1992, p. 351.

IV. 靑少年 犯罪의 原因

靑少年犯罪은 왜 발생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靑少年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犯罪少年들을 개화·교정시키기 위한 대책들도 세울 수 없을 것이다.

당초에는 犯罪의 原因을 구함에 있어 個人的 素質을 중시하는 素質說과 社會的 環境을 중시하는 環境說이 대립하고 있으나 犯罪은 個人的 素質 뿐만 아니라 社會環境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社會環境이 犯罪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래 素質과 環境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써, 素質은 環境으로 인하여 지배되고 環境은 素質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犯罪에 있어서는 素質과 環境의 영향 중에서 어느 것이 한층 크거나 또는 적거나의 문제가 있을 따름이다.³³⁾

본 논문에서는 犯罪가 素質과 環境 모두의 작용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서 靑少年犯罪의 原因을 糾明하고자 한다.



1. 個人的 要因

靑少年期에는 身體的·精神的으로 아이도 어른도 아닌 성인이 되어 가는 인생의 과도기로서 모든 思考와 行動이 불안정한 시기이며, 신체의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그러한 변화를 감당할 만한 정신적 발달은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로, 이때의 靑少年들은 心理的으로 여러가지 특징들을 갖고 있다.

靑少年期の 특징은 여러가지 과도기적 현상인 矛盾과 混亂, 批判性, 反抗性, 內面的 生活의 發見, 自我意識의 鼓吹, 精神的 獨立 등으로 이 시기에는 신체적

33) 愼續揆, 前掲書, pp. 94-95.

특징의 발견과 사회생활 환경의 확대에 의해 새로운 정서적 긴장이 생기며, 욕구불만과 갈등, 불안의 원인 등을 내포하고 있다.³⁴⁾ 따라서 이 시기에는 靑少年들이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1) 遺傳的 原因

사람의 성격, 체질, 지능상태들은 선조로부터 遺傳的 條件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는 어느 정도 犯罪性의 形成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그 혈족 중에 나쁜 유전조건인 精神病, 精神疾患, 精神薄弱, 犯罪者, 飲酒癖, 自殺者 등이 있는 경우 그것이 하나의 犯罪原因이 될 수도 있다.³⁵⁾ 그러나 犯罪의 遺傳性에 대하여 현재 刑法學은 이를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2) 精神的 欠缺 原因

Lombroso의 生來的 犯罪人에 대한 많은 오류들이 드러난 후 정신병이나 정서적 불안이 犯罪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는 심리학자와 정신의학자들이 나타났다.

精神的 欠缺이란 정신상의 병리 현상을 말하며 대체로 精神薄弱, 精神病疾, 精神異常 등의 병상을 나타낸다.³⁶⁾

精神病에는 他人性 精神病(뇌를 침해하는 각종 상해, 질병, 또는 기관의 손상으로 인해 일어나는 정신병, 뇌손상에 의한 외상성 정신병, 중독성 정신병)과 內因性 精神病(정신분열증, 조울증 등)이 있는데 이는 항상 犯罪의 原因이 되는 것은 아니다.

精神薄弱이란 I.Q 70이하의 경우로 자기행동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서 合理的 判斷力과 洞察力이 결여되어 있어서 인간의 본능적 욕구에 지배되기 쉬운 상태를

34) 李國炯, 前掲論文, p. 34.

35) 鄭榮錫, 前掲書, p. 77.

36) 정신병, 정신박약, 정신병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上掲書, pp. 87-95 참조.

말한다. 精神病疾이란 精神薄弱과 달리 성격상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 社會適應力의 缺如로 인하여 방황과 번뇌에 빠져 급기야는 犯罪 내지 犯行을 저지를 소지가 많다. 이러한 精神薄弱과 精神病疾은 犯罪要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精神病, 精神病疾, 精神薄弱 등이 있는 경우 그 심리적 특성이 정상아 보다 성취욕구가 강하고 사소한 일에 흥분하고 반항하는 등 부정적 사고 경향이 강하므로, 정신적 흠결이 있는 감수성이 예민한 靑少年들은 불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우려가 많다.³⁷⁾ 즉 이러한 특성을 지닌 사춘기에 있는 靑少年들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犯罪나 非行에 빠질 수가 있다.

3) 身體的 要因

글루크(E. T. Glueck) 夫妻에 의하면 非行靑少年들은 정상소년들에 비해 체격이 더 큰 편이고 또 차츰 가늘어 지는 허리통, 강하고 힘센 팔, 작은얼굴, 굵은 목, 넓은 어깨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非行少年들은 키가 대체로 크기 보다는 땅딸막한 편이며 14세 까지는 체격의 발달이 늦다가 그 이후에 갑자기 커져서 다른 사람을 앞지르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³⁸⁾

크레취마(E. Kretschmer)는 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크게 비만형, 투사형, 세장형으로 3등분하여 그 중 활동적이고 공격성을 가진 투사형이 범죄성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身體的 特徵들이 犯罪의 주요한 原因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身體의 흠결이 犯罪性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와 영향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통계나 기타 방법으로 명확히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체적 흠결 자체가 犯罪와

37) 金榮植, "靑少年 非行에 관한 研究", 「論文集」, 慶南大學校 大學院 第 4輯, 1989, pp. 241-242.

38) 池光準, 「靑少年 犯罪와 非行」, 삼신각, 1992, pp. 94-95.

非行에 빠지게 한다고 볼 수 없더라도 犯罪은 어떤 의미에서 불건전한 정신의 발현이므로 “건전한 精神은 건전한 身體에 깃든다”는 말이 있듯이 신체에 흠결이 있는 자는 사회 생활상의 보통인 보다 犯罪 내지 非行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며 더욱 신체적 흠결로 인한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상의 영향들이 불건전한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³⁹⁾

4) 심리적 요인

靑少年은 心身兩面이 성장 과정에 있으므로 그 인격은 미완성이고 심리상태는 사춘기적⁴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심리 상태에서는 잘못하면 犯罪나 非行에 빠질 우려가 많다.

글루크 夫妻의 조사에 의하면⁴¹⁾ 非行少年(犯罪少年)은 ① 정상소년에 비하여 감정구조의 適切度가 부족하고 정서의 안정도가 크게 떨어지며 ② 감정구조가 정상소년에 비해 기본적으로 反動的, 攻撃的, 冒險的, 外向的, 被暗示的, 頑固的이라고 밝혀졌다.

이와 같이 非行少年(犯罪少年)은 정상인에 비해 外向性이 강하고 攻撃的이며, 冒險的이고 주변 상대자에 대한 의혹심과 적의심을 느끼며, 반항적, 도전적인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社會의 慣習이나 規則에 순응하는 경향이 부족하여 犯罪 抑制力이 약하다.⁴²⁾ 따라서 非行少年(犯罪少年)은 더욱 쉽게 犯罪나 非行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

39) 金榮植, 前揭論文, p. 242.

40) 이 시기는 자아의식이 발달하는 시기이며 심리적 유아기라고 일컬어 질 만큼 자신이 속한 환경속에서 독립을 원하며, 혼자 고립해 있기를 좋아하고, 이성에 대한 감정이 싹터 연애 감정이 풍부한 시기이다.

41) S. and E. T. Glueck,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 (1950), chapter 18, 19, 金榮植, 前揭論文, p. 242에서 재인용.

42) 上揭論文, p. 243.

2. 家庭環境的 原因

家庭은 靑少年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접촉하는 최초의 社會集團이며 靑少年들이 社會生活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행동양식 등을 배우게 되는 곳이다.

또한 家庭은 가족구성원간의 인간관계, 성격, 교육 및 경제적 수준 등에 의해 靑少年들의 人格形成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家庭이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완성된 靑少年들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할 때에는 잠재적으로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기구로써 작용할 수 있겠으나 만약 家庭의 機能에 欠缺이 있는 경우에는 靑少年의 人格形成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犯罪行爲로 나타날 위험성이 높아진다.⁴³⁾

가정에서의 부모는 능력을 가지고 가정에 안정감을 줌과 동시에 靑少年들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확고하게 일관된 家庭敎育을 통해 자녀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시켜 주고, 규칙의 위반에 민감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리하여 靑少年들은 경쟁 사회 속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자신감을 가져 곤란에 정면으로 맞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애정은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을 가르쳐 주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⁴⁴⁾

이처럼 家庭에서의 부모의 지도와 태도는 靑少年犯罪를 豫防하거나 犯罪를 誘發시킬 수 있는데, 靑少年犯罪를 유발시키는 부모의 잘못된 태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⁴⁵⁾

첫째,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한 부모, 아버지나 어머니 혼자서 훈계를 하는 경우와 부모의 지나친 과잉보호 속에서 자녀의 善惡을 분별하여 주지 못하는 부모

둘째, 잦은 부부 싸움 등으로 가정에서 자녀와 대화가 없는 부모

43) 金東澈, "靑少年 犯罪의 環境的 要因과 그 對策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1991, p. 47.

44) 李相賢, "家族과 少年犯罪에 관한 研究(上)", 「矯正」, 통권 176호 (1990, 12월호), 矯正協會, p. 20

45) 金東澈, 前揭論文, pp. 47-48.

세째, 야단과 질책으로 일관된 생활속에서 자녀의 좋은 점을 칭찬하여 주지 못하는 부모와 학교성적 하나에다 기준을 두고 평가하는 부모

네째, 가풍이나 전통적 가정의 규율이 없고 부모의 생활이 무질서한 가정

다섯째, 잦은 전출과 이주가 심한 가정

여섯째, 자녀의 고민이나 당면 문제를 소극적인 자세로 방관하며, 일류학교 진학 등 지나친 기대를 갖고 감독하는 부모

이러한 부모의 잘못된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 형성 및 도덕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靑少年犯罪의 원인이 된다. 부모의 잘못된 양육태도 즉 거부적 태도, 과보호 태도, 권위적 태도 등은 애정결핍가정, 혼욕결핍가정, 과보호가정, 갈등가정, 부도덕가정 등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 들이다. 이와같은 부모가 잘못된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가정에서는 자녀의 성격이 무기력하거나 의존적·수동적이거나 우유부단하게 되고 결국 이같은 왜곡된 성격으로 인해 靑少年犯罪에 빠질 위험성이 커지는 것이다.⁴⁶⁾ 또한 이들은 결손가정, 맞벌이 가정, 빈곤가정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문제들이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都市化, 工業化, 産業化의 영향으로 인하여 가정이 점점 핵가족화 되면서 가정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靑少年非行과 犯罪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⁴⁷⁾

여기서 犯罪行爲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不良家庭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1) 貧困家庭

貧困家庭이란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노동력은 있어도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가계에 타격을 받는 家庭을 말하며 모자가정, 노인가정, 병자가정, 자녀가정 등을 포함한다. 貧困家庭인 경우 빈곤 그 자체는 도덕적으로 불량한 것이라고

46) 崔華淑, 前揭論文, p. 27.

47) 金榮植, 前揭論文, p. 244.

할 수 없으나 경제적 곤궁은 사람의 인격형성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정의 곤궁이라는 사실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非行과 犯罪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있다.⁴⁸⁾

貧困에는 금전적·절대적 빈곤과 심리적·상대적 빈곤이 있는데 현재의 犯罪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요인은 금전적인 절대 빈곤이지만 오늘날에는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사치와 향락으로 흘러 더 좋은 것을 갈구하게 되어 금전적 절대 빈곤은 감소한 반면 심리적·상대적 빈곤은 증가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따라서 靑少年 犯罪者도 예전과 달리 심리적·상대적 빈곤 가정에서 많이 양상되고 있다.

靑少年들의 성장 환경으로서 貧困家庭이 犯罪와 關係를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貧困家庭에서는 부모들이 생계유지에 급급하다 보니 자녀들에 대한 훈육, 감독을 올바르게 행하기 어렵다. 둘째, 貧困家庭에서는 자녀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없다. 셋째, 貧困家庭은 대개 저속한 문화환경 속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靑少年들의 불량문화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⁴⁹⁾

2) 不道德 家庭

不道德 家庭은 가족원 중에 범죄자, 부도덕자, 알콜 중독자 등 사회적 불량자가 가족의 성원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하는 것으로 부도덕 가정에서 범죄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부도덕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그 부도덕에 익숙해져 불량화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⁵⁰⁾ 부도덕 가정은 형태상으로 아무런 결함이 없으나 가정이 가지는 기능이 현저하게 손상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능적 결손가정이라고 할

48) 朴哉昊, 前掲論文, p. 40.

49) 李爽鎬, "靑少年 非行의 環境的 原因 分析과 豫防對策", 碩士學位論文, 朝鮮大學校 大學院, 1989, p. 33.

50) 崔華淑, 前掲論文, p. 38.

수 있으며, 그러한 가정에 있는 소년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犯罪나 非行이라는 下位文化에 익숙하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⁵¹⁾

Sutherland는 靑少年犯罪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不道德 家庭으로 다음의 경우를 들고 있다.⁵²⁾

첫째, 가정내의 다른 사람들이 犯罪를 범할 우려가 있는 반도덕적인 가정이나 음주가정인 경우 둘째, 양친이 별거하는 경우 셋째, 무식하거나 장님 기타 지각적 결여에 의하여 청소년에 대한 감독을 하지 못하거나 양친이 없거나 편친인 경우 넷째, 주거가 협소한 경우 다섯째, 양친이 간섭하지 않는 경우 여섯째, 가정의 不和한 경우 일곱째, 가정에 분쟁이 있는 경우 여덟째, 양친이 엄격해서 가혹한 경우 등이다.

Cyril Burt는 미국에서 행한 연구에서 犯罪者의 家庭은 非犯罪者의 家庭보다 不道德性和 犯罪記錄을 가진 예가 5배나 더 많았다고 한다.⁵³⁾

3) 缺損家庭

缺損 家庭은 양친의 일방이나 쌍방이 사별, 이혼, 별거, 유기, 실종, 장기수형, 장기부재 등의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훈육과 보호에 차질이 생기는 가정으로 構造的 缺損家庭과 양친이 불화, 갈등, 방임 및 가정의 부도덕 등으로 인하여 가정의 본질적인 기능인 생활의 상호 보장과 심리적·신체적으로 자녀의 교육이 결여되어 있는 機能的 缺損家庭이 있다.⁵⁴⁾ 缺損家庭은 가정의 결합상태가 미약하여 가족구성원간의 연대감도 희박하고, 서로 혈연적 사랑을 나누기 보다는 개별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런 이유로 缺損家庭은 바람직한 훈육적

51) 李奭鎬, 前揭論文, p. 35.

52) 朴哉昊, 前揭論文, p. 35.

53) 鄭榮錫, 前揭書, p. 128.

54) 李奭鎬, 前揭論文, p. 31.

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많고 결국 靑少年犯罪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⁵⁵⁾

외국의 조사결과를 보면 비행집단과 정상소년집단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 영국의 C. Burt는 비행소년들이 정상소년들보다 2배 가량 결손가정출신이 많았다고 한다. 반면 Glueck 夫妻는 비행소년과 정상소년들의 결손가정 출신비율이 1.18 : 1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Show와 Mckay의 연구에서도 그 차이가 근소하여 缺損家庭의 非行이 유력한 요인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⁵⁶⁾

이와같은 연구결과를 보면 構造的 缺損家庭에서 자라난 靑少年들이 모두 非行 靑少年이나 靑少年 犯罪者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은 양친이 모두 있어 형식 상으로 완전가정이라고 할 지라도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가 不在한 가정환경에서 생활하게 되는 機能的 缺損家庭이 많고 이러한 가정에서 자라난 靑少年들도 構造的 缺損家庭의 靑少年들처럼 정서적 불안 등의 이유로 犯罪나 非行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⁵⁷⁾

4) 葛藤 家庭

葛藤家庭이란 가족원 사이에 감정, 이해관계, 가치관, 생활관 등에 갈등이 있어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경우를 가르킨다. 이러한 갈등은 본인자신과 다른 가족원들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은 단지 간접적으로 그것을 의식하여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다.

가정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⁵⁸⁾

첫째, 친구세대간의 가치관 차이에 의한 갈등

둘째, 가족원 특히 부모가 서로 그 교육, 지성, 인생관, 성격, 소망 등에서

55) 鄭榮錫, 前掲書, p. 124.

56) 慎鎭探, 前掲書, p. 368. ; 上掲書, p. 128.

57) 朴哉昊, 前掲論文, p. 39.

58) 李國炯, 前掲論文, pp. 40-41.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

세째, 정상적인 가족구성이 파괴되어 혈족관계가 없는 자가 개입하여 온 경우

네째, 가정의 주도권,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갈등

다섯째, 양친 중의 일방이 혼인외의 성관계를 갖는 경우

여섯째, 가족중 정신적·육체적 흠결자 또는 불명예자가 있는 경우

일곱째, 가족원간의 종교의 상이

여덟째, 근친자가 동거하여 가족관계가 복잡해진 경우

이러한 갈등은 靑少年들이 가출, 방황 등 비정상적인 생활에 빠져들게 하기 쉽고 더 나아가 犯罪를 저지르게 한다

갈등이 있는 가정에서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정 분위기로 인해 靑少年들의 성격이 비정상적으로 되기 쉽고 심지어 갈등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가족들에 대해 犯罪를 저지르기도 한다. 가족간의 갈등은 犯罪의 중요한 수반현상이며, 특히 이로 인한 가족의 통제력 상실은 靑少年의 성격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갈등가정에서 犯罪 靑少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⁵⁹⁾

靑少年들은 가정내의 갈등으로 인한 불안한 분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주로 가정 밖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가출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불량한 교우관계에 빠져 쉽게 犯罪나 非行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5) 施設家庭

施設家庭은 고아원 기타 아동교육시설이 가정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시설에서 자라난 靑少年들은 시설가정의 諸施設이 완벽하다고 할 지라도 친부모와 같은 애정을 받을 수가 없고, 그 시설의 직원과 진정한 애정관계가 교환

59) 鄭榮錫, 前掲書, p.128.

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가정의 靑少年들은 자연히 애정결핍으로 인하여 반항적, 거절적 심리, 또는 남을 무시하는 태도를 나타내기 쉽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은 언제나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관념을 유리하게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非行性에 친근하게 되기 쉽다.⁶⁰⁾

그러나 施設家庭의 靑少年중에는 犯罪者가 아닌 者도 상당수 있으므로 모든 施設家庭의 靑少年들이 犯罪 靑少年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6) 愛情缺乏 家庭

양친과 자녀사이 그리고 형제자매들 사이에 깊은 애정적 관계의 형성은 靑少年들의 인격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이들 사이에 애정이 결핍되면 犯罪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아진다.

Glueck 夫妻가 조사한 가족원간의 애정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非行靑少年들은 無非行靑少年들 보다 그 부모로부터 사랑을 덜 받고 또 그들 자신도 부모와 형제자매를 깊은 애정감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무관심이나 적대적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⁶¹⁾

Andry에 따르면 非行少年은 정상소년에 비해서 부모의 뚜렷하고 공개적인 애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⁶²⁾ 이것은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간의 애정적 수용관계가 靑少年非行과 犯罪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애정결핍 가정이 靑少年非行에 원인이 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60) 李卓宰, "靑少年 犯罪의 原因과 豫防對策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1990, p. 45.

61) 李國炯, 前揭論文, p. 42.

62) Robert. G. Andry, *Delinquency and Parental Pathology*, London: press, 1971, pp. 40-41.

7) 訓育缺乏과 過保護家庭

訓育缺乏 家庭이란 자녀에 대한 훈육과 감독이 적절하게 행해지지 못하는 가정을 말하며, 過保護 家庭은 부모가 자녀를 지나치게 보살피 주는 가정을 말한다. 가정형편이 부유하고 부모의 관계가 원만하더라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훈육방법에 일관성이 없고 큰 결함이 있다거나 자녀에 대한 지나친 보호는 靑少年犯罪의 원인이 된다.⁶³⁾

영국의 Burt는 非行少年의 경우 훈육방법에 결함이 있는 가정의 출신율이 無非行少年 보다 6배나 더 많다고 하고, 훈육결함이 빈곤보다 4배나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그는 訓育缺陷의 경우를 ① 양친이 훈육에 무관심한 경우 ② 양친이 신체적, 지적, 도덕적 결함 때문에 훈육을 바로 할 수 없는 경우 ③ 부모간의 자녀 양육방법에 관한 의견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④ 지나치게 엄격한 훈육 등 4가지로 분류한다.⁶⁴⁾

이와같이 훈육과 감독상태에 결함이 있을 때에는 인간의 성악적 본성이 그대로 발로 되기 쉬워서 이것이 주변의 유해한 환경과 결합될 경우 더욱 쉽게 非行이나 犯罪로 연결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부모들의 지나친 과보호로 인한 非行靑少年과 犯罪靑少年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바람직한 훈육태도가 靑少年의 건전한 육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유의하여 處罰이나 지나친 過保護보다는 靑少年 스스로가 올바른 價値觀을 가지고 規律를 준수하도록 訓育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8) 맞벌이 가정

현대 사회에서는 産業化의 진전에 따라 여성고용증가, 핵가족화에 따른 여권 신장과 가족적 유대의 약화, 생활정도의 향상 및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家電化에

63) 崔華淑, 前掲論文, p. 37.

64) 慎鎮授, 前掲書, pp. 372-374.

따른 가사노동의 부담축소 등에 힘입어 주부가 가정을 떠나 직장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가정생활 및 가족구성원간의 인간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맞벌이 가정에 있어서 부모의 맞벌이 자체가 靑少年 非行과 犯罪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부의 지위와 수입이 남편보다 우위에 있을 때 남편이 느끼는 콤플렉스나 경쟁심에서 오는 부부의 갈등, 주부의 귀가시간이 늦을 때의 가정불화, 다른 지방으로의 전근으로 생긴 가족과의 별거생활, 주부의 1인 多役에서 오는 心理的·肉體的 피로가 자녀교육과 양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⁶⁵⁾ 따라서 맞벌이 가정에서의 자녀들은 불안감, 소외감, 부모의 통제로부터의 해방감에 휩쓸려 불량친구들과 교제하거나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등 犯罪에 빠질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9) 가출과 소년 범죄

흔히 가출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중의 일인 혹은 다수가 자신의 지위에 해당하는 역할 수행을 포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 집을 나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가출이란 단지 20세 미만의 未成年者에게만 적용되는 용어가 아니라 행위의 책임능력이 있는 成人에게도 적용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성인들의 가출이 아닌 靑少年의 家出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⁶⁶⁾

첫째, 靑少年期에는 理性에 의한 思考를 바탕으로 행동하기 보다는 감정이나 충동에 의해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이며 둘째, 靑少年들은 과도기적 특성상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느낄 정도로 성숙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며 셋째,

65) 崔華淑, 前掲論文, p. 31.

66) 金俊鎬, “靑少年의 家出과 非行에 관한 研究”, 「刑事政策研究」, 제 3권 제 4호(1992, 겨울), 韓國刑事政策研究院, pp. 50-52.

이러한 탈선적 행위가 일과성의 성격을 띠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형 또는 보다 심각한 내용의 非行과 犯罪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少年法 제 2장 제 1절 제 4조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한 자”는 소년 보호사건의 하나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출에 대한 범위 및 성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개 가출은 ‘자신 및 자신을 둘러싼 주위환경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에서 비롯된 문제점에 대한 반발이나 해결을 위해 보호자의 승인없이 최소한 하루밤 이상 무단으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충동적 혹은 계획적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⁶⁷⁾

이러한 靑少年의 家出은 자유와 독립의 추구라는 긍정적인 면 보다는 사회질서의 파괴, 가족해체 및 범죄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 가출의 원인으로는 개인의 심리적 불안정, 가치관의 혼동, 가정의 불화, 학교에서의 부적응, 나쁜 친구 및 환경 등을 들 수 있다.⁶⁸⁾ 가출한 소년은 불량한 환경에 처하기 쉬우며 부당한 근로조건하에서 노동에 종사하거나, 불량배 소굴에 들어가 犯罪의 세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출은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결과에 있어서도 靑少年犯罪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3. 教育環境的 要因

현대에 있어서 敎育을 말할 때는 학교라는 시설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만큼 학교 敎育은 靑少年期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學校에서 學生들이 學校生活에 흥미를 잃고 學校를 否

67) 金俊鎬, 上揭論文, p. 52.

68) 박정선, “靑소년의 가출에 대한 계언”, 「형사정책 연구소식」, 통권 제 8호(1991. 11. 12월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 32.

定的으로 보게 되면 靑少年非行이나 犯罪로 연관되어 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學校敎育은 全人的 人間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학교 進學을 위한 방편으로 다루어 짐으로써 學校敎育 자체가 목표 지향적이지 못하여 수단화 되고 있고, 이러한 경우 靑少年들의 심신적 욕구를 학교가 충족시켜 줄 수 없으며 아울러 學生들의 학교에 대한 거부 현상은 학교 이탈현상을 가져와 靑少年非行과 犯罪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많게 된다. 또한 불량친구와의 교우관계, 교사와 학생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가 이루어 질 때는 학생이 학교에 대한 싫증, 거부감 등으로 인해 犯罪에 빠질 수도 있게 된다.⁶⁹⁾

여기서는 학교환경과 교육제도의 문제, 교사와 교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敎育環境的 면에서의 靑少年犯罪의 要因을 살펴보고자 한다.

1) 敎育環境의 原因

學校는 한 개인이 가정을 떠나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社會의 제 2차 集團으로 社會의 공식적 가치를 전달하고 社會인으로서의 역할을 학습시키는 주된 매체가 된다. 여기서 지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社會에의 동화력을 배우고, 학우들과의 집단생활 속에서 社會·문화적 활동의 기본적 태도가 육성되어 가는 것이다.⁷⁰⁾ 따라서 학교에서의 올바른 교육과 지도는 社會에서의 犯罪發生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일찍이 학교 환경과 비행에 관해 연구한 Elliot와 Voss는 학교가 가정보다 비행을 생산하는 위험한 모체가 된다는 점을 강조 하면서 학업성적이나 학교생활에서의 규칙위반, 비행교우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은 중요한 비행예측지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Navotony와 Burstein 역시 少年院에서 출감한 후 學校로 복귀된 學生들이 75%가 결국에는 學校에서 탈락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學校

69) 金榮植, 前掲論文, pp. 244-245.

70) 李爽鎬, 前掲論文, p. 41.

環境이 非行과 犯罪의 모체가 된다고 강조하였다.⁷¹⁾

靑少年問題의 원인이 되는 教育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① 과밀학교와 과대규모의 학교 ② 학교주변의 유해 환경 ③ 입시위주, 성적위주의 教育 풍토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렇듯 教育환경에 장애가 있을 때 學生은 올바른 사회적 태도 및 가치관의 형성·발달에 지장을 받게 되며, 반항적·도피적 태도, 권위의 경시, 비행집단에의 동일화 등의 위험한 상태에 빠져 非行이나 犯罪에 젖어들게 되는 것이다.⁷²⁾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입시위주, 성적위주의 教育제도로 인해 靑少年들에게 공부에 대한 긴장감과 압박감을 갖게 함으로써 오히려 靑少年들의 犯罪를 조장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입시위주, 성적위주의 教育환경에서는 학생의 인격과 미래에 대한 평가가 단지 학업성적의 성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학업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가치있고 의미있게 보지 않으며, 또한 교사들도 그들에 대하여 기대나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실학교는 지식전달의 장이며 교사는 지식판매자가 되고 말았으며, 학교는 입학시험 준비를 위한 입시주차장이지 教育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고 극단적으로 역설한 것처럼 우리의 教育은 고학력 편중의 사회적 경향으로 인해 全人的 人間教育이 아닌 知識爲主의 教育과 入試爲主의 劣等주의·편의주의 教育이 되어 버렸으며, 이러한 잘못된 教育풍토와 과밀학교 등의 부적절한 환경 조건은 靑少年 犯罪의 모체가 되고 있다.⁷³⁾

2) 教師 및 校友의 關係

교사는 학생과 일차적 접촉을 가지며 學校에서의 社會化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그들이 교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學生들은 교사에 대하여 실망과 혐오감

71) 安慶太, 前揭論文, p. 42.

72) 李寅鎭, 前揭論文, p. 41.

73) 李國炯, 前揭論文, p. 45.

을 갖게 된다.

특히 오늘날 대부분의 학교는 학급의 크기가 너무 크며 인원 또한 많기 때문에 소수의 교사가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하게 되어 교사와 학생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고,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해 교사가 올바른 역할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 학생들과의 거리감을 주고 있고, 학생은 성적만으로 평가되어 성적이 불량한 학생은 학교에서 소외되고 공부에도 학교생활에도 관심과 흥미를 잃게 되어 문제 학생으로 되고 있다.⁷⁴⁾

또한 靑少年들은 불건전한 이성교제, 불량써클에의 가입, 불량교우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犯罪의 길을 걷게 된다. 靑少年期에 있어서 그가 소속하고 있는 집단의 성원들로부터 승인·수용되고 있느냐 않느냐의 문제는 靑少年의 사회성 발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靑少年들은 그 집단에서의 격리나 배척을 두려워하여 사회적으로 볼 때 無價値하고 禁止되고 있는 것이라 할 지라도 서슴치 않고 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靑少年期の 교우관계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靑少年들은 교우관계에서 동년배의 친구들과 사귀고 집단적인 연대의식, 사회에 대한 태도, 자신의 역할과 책임, 자율 등을 학습하게 된다. 따라서 불량친구들과 교제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犯罪의 길을 걷게 되며, 더 나아가 우정을 바탕으로 한 反社會性을 가진 犯罪集團을 형성하기도 한다.⁷⁵⁾

靑少年은 개인의 욕구불만이나 학교생활에서의 열등감 혹은 소외감이나 세대간의 단절 등으로 빨리 성장해서 독립하기를 기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불만과 갈등이 심해져 이것이 반항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실의에 빠져 헤매다가 非行

74) 金德容, "靑少年犯罪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濟州大學校大學院, 1986, p. 40.

75) 朴哉昊, 前掲論文, pp. 46-48.

集團을 형성하든지 혹은 非行靑少年과 어울려 불량한 교우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다.⁷⁶⁾ 이러한 불량 교우의 문제는 學校의 지나친 處罰爲主의 敎育에도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 우리의 處罰爲主의 學校生活指導는 靑少年들이 아직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方位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실수나 과오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靑少年의 반발과 반항심만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 靑少年의 問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⁷⁷⁾

3) 敎育制度上의 問題點

입시제도로 말미암아 재수생의 문제도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고등학교나 대학입시에서 실패한 재수생들은 입시에 대한 불안과 초조, 실망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 갈등을 일으켜 식욕, 소화기능의 장애 등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황폐화되고 있다. 재수생들은 상급학교에 진학한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어 열등감에 사로 잡히게 되고 불안, 불만, 신경질, 소외, 좌절감, 초조, 긴장감 등에서 도피하기 위해 허세를 부리게 되고 자신이 사회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담배를 피운다거나 같은 또래의 재수생들과 술을 마시고 이성교제를 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자칫 잘못하면 犯罪나 非行의 길을 걷게 되기가 쉽다.⁷⁸⁾

4. 社會環境的 原因

人間은 社會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며, 人間은 社會속에서 성장한다. 靑少年들

76) 李國炳, 前揭論文, p. 46.

77) 李寅昊, 前揭論文, p. 45.

78) 上揭論文, p. 46.; 李國炳, 前揭論文, p. 48.

은 사회집단내에서 소속단체의 행동양식, 가치관, 규범과 같은 문화를 습득하고 자신의 인격을 형성해 나간다. 근래에는 여러가지 사회적 조건과 가치관이 변모하게 됨으로써 물질만능주의, 향락주의, 편의주의 생활풍조 등이 靑少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⁷⁹⁾

歐美의 여러나라에서는 非行과 犯罪가 사회의 産業化, 工業化로 인한 사회구조의 급진적 변화에 기인한다고 보았고, 프랑스의 사회학자 J. G. Tarde, 독일의 범죄학자 H. Kaiser 등도 生物學的 要因의 견해를 부정하고 社會的 條件이 犯罪와 非行의 絶對的 要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⁸⁰⁾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어 위에서 살펴본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교육환경적 요인 뿐만 아니라 社會的 環境도 靑少年犯罪의 量的·質的 變化의 촉진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⁸¹⁾ 그러면 社會的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靑少年들을 犯罪와 非行에 빠뜨리게 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地域社會와 靑少年 犯罪

犯罪의 발생은 지역 사회에 따라 상이하여 도시에서가 농촌지역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犯罪 내지 非行이 현저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 靑少年犯罪가 도시 집중화 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인구와 재산의 집중 둘째, 욕망과 자극과 유혹의 증가 셋째, 도주와 범죄 은폐의 용이 넷째, 주민의 이질성이 심화되고, 이동성으로 인한 근린간의 협동정신의 박약 다섯째, 비행지역과 불량문화재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로서는 도시는 그 생활의 불안정, 인적 구성의 변화,

79) 姜孟鎭, "靑少年犯罪의 動向과 그 對策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1989, pp. 33-34

80) 權彝種, 「社會敎育과 靑少年指導」, 배영사, 1987, pp. 128-129.

81) 愼鎭揆, 前掲書, p. 301. ; 鄭榮錫, 前掲書, p. 122.

생존경쟁 등이 격심하여 농촌의 보수적이고 안정된 공동체적 생활양식과 인간관계와는 전혀 상이한 사회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⁸²⁾

도시의 발달에 따라 상가를 중심으로 하는 소비지 지역, 다방, 요정, 극장 등의 유흥업소들이 모여있는 곳은 非行의 위험성이 있는 虞犯少年, 不良少年들에게 절대적인 흡인력으로 작용한다. 대도시의 이러한 불건전성은 교통기간의 발달, 매스컴의 영향 등에 의하여 지방 중소도시에도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文化的 環境과 靑少年 犯罪

文化的 環境이란 어느 국민의 윤리관, 종교관, 풍속, 관습, 교양정도, 문명 및 기술적 발전정도 등을 말한다. 이러한 文化的 環境은 그 사회구성원에게 行動의 基準을 설정해 주고 犯罪로 나아가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⁸³⁾

自然的 環境은 그 대부분이 인위적이지 않기 때문에 刑事政策的으로 이를 개선하는 것은 곤란한데 반하여 文化的 環境은 그 조건을 어느 정도 人爲的으로 개조할 수 있는 점에 중요한 意義가 있다.

靑少年犯罪의 발생에 있어서 문화적 배경으로써 중요시 되는 것은 文化葛藤이다. 文化葛藤은 社會的 價値, 規範, 風俗, 習俗, 慣習, 利害關係 등이 어떤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조화가 이루어 지지 않거나 차질이 생기는 것을 특색으로 하는 사회적 조건 즉 사회적 가치, 이해관계 및 규범의 충돌을 의미한다.⁸⁴⁾ 이러한 사회적 관념의 혼란 내지 상실은 사춘기의 靑少年들의 行動에 크게 반영되어 여러가지 犯罪의 원인이 되고 있다.

82) 安慶太, 前掲論文, pp. 47-48.

83) 上掲論文, p. 48.

84) 金德容, 前掲論文, p. 44.

우리나라에서도 해방 이후 선진제국과의 교류로 인해 자유주의적인 風俗, 慣習, 制度 등이 도입되어 국민의 윤리관, 가치관에 커다란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고, 대가족 중심의 共同體 社會가 夫婦中心的, 個人主義的 社會로 변화하여 이에 적응하지 못한 靑少年들의 犯罪가 증가하였고 특히, 여성의 性開放 풍조로 인해 性犯罪의 증가를 가져왔다.

3) 大衆媒體와 靑少年 犯罪

현대에 있어서 대중 매체⁸⁵⁾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일상생활에 있어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되고 있다.

대중매체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갖고 있다. 먼저 순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6) 첫째, 매스컴은 값싸게 생활정보와 지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사회 경제생활에서 낙오함이 없이 건전한 생활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매스컴은 현대의 분파적이고 모순 갈등적인 사회문화 구조속에서 사람들 상호간의 입장을 서로 이해 하게끔 함으로써 그 사이에 있는 갈등과 모순을 감소시키고 통합·조정을 더욱 가능하게 한다. 셋째, 매스컴은 사회적인 犯罪 또는 非行行爲를 자행한 者의 명단과 비행을 널리 일반 국민에게 전달하고, 社會的 懲罰이 가해지게끔 함으로써 다른 유사행동을 방지한다. 넷째, 사회내에 발생하는 범죄현상 등 신기한 사건들을 보도함으로써 사람들의 내심에 존재하는 본능적인 犯罪衝動을 억제한다.

매스컴은 이와같이 인간에게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85) 대중매체(masscomm=mass communication=mass media)란 신문, 잡지, 서적, 라디오, TV, 영화, 연극 등을 가르키는 것으로 현대사회는 매스컴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중매체가 급속도로 발전·보급되고 있다. 게다가 현대인들은 그들의 여가시간을 거의 대부분 대중매체와 보내고 있어 그 영향도 무시하지 못한다.

86) 慎鐵揆, 前掲書, pp. 357-358.

도와주는 반면, 오히려 비윤리적인 인간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대중매체기관 상호간의 경쟁속에서 대중매체는 광고 수입의 증대, 판로의 확장을 노린 나머지 극단적인 상업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들이 감수성이 예민한 靑少年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⁸⁷⁾ 대중매체가 미치는 역기능적인 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⁸⁸⁾

첫째, 대중매체는 犯罪實行의 장면을 너무 노골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거기에서 범죄수법을 배워 새로운 犯罪行爲를 초래하게 할 수 있다. 둘째, 대중매체는 특히 犯罪者의 딱한 처지를 동정하면서 그를 단속하는 司法機關의 활동에 대해서는 냉담함으로써 사람들의 司法機關에 대한 존경심을 손상 시킬 수 있다. 셋째, 대중매체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양식을 공개적으로 널리 소개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욕구불만감을 증대케하고 이로 인한 불만계층의 犯罪를 조장할 수도 있다.

이렇듯 대중매체는 순기능적으로 사회구성원에게 기여하는 면도 있으나 그 인격형성 및 행위양식에 불량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犯罪의 原因이 되고 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靑少年들의 가치관 형성과 정서함양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할 것이며, 대중 매체는 靑少年이 성인사회의 가치, 태도, 사회적 지식을 의도적으로 추구하지 않더라도 쉽사리 얻을 수 있게 하며, 靑少年들에게 호기심, 모방심, 모험심, 충동심 등을 느끼게 하여 犯罪나 非行에 빠지게 할 위험이 더 크다 할 것이다.⁸⁹⁾

여기에서 靑少年犯罪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중매체들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87) 姜孟鎭, 前揭論文, p. 42.

88) 慎鎭揆, 前揭書, pp. 358-359.

89) 金德容, 前揭論文, p. 45.

(1) TV 매체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미디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과거 어느때 보다 많기 때문에 매스 미디어는 社會化의 중요한 집행자로 평가된다. 특히 靑少年들은 TV에서 묘사되는 각종 사회적 위치의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양식을 모방하여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사회적 역할을 학습하게 된다.

우리나라 靑少年의 경우 그들이 어떠한 유형의 여가활동이든지 마음껏 즐길 만한 충분한 공간, 적절한 장소의 확보가 미흡하다 보니 靑少年들이 TV를 보면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러면 이들 TV가 靑少年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낙관론자들은 TV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일, 우주의 모습 등을 시공을 초월하여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靑少年들에게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폭넓은 학습경험을 제공한다고 한다. 그러나 비관론자들은 과중한 TV시청은 靑少年들의 건전하고 활동적인 운동과 유희의 기회를 감소시키며, 범죄물, 폭력물에 대한 지나친 접촉은 靑少年들의 도덕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⁹⁰⁾ 보통은 TV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인다. TV가 靑少年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소년의 공격적 성향에 대한 영향

TV에서의 범죄나 폭력적인 장면은 靑少年들에게 犯罪를 가르치는 구실을 하며 도덕적 저항력이 약화되어 있는 靑少年들에게 일종의 조건 반사적 행위 패턴에 의해 폭력을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며, TV에서의 과장되거나 왜곡된 범죄나 폭력의 묘사는 靑少年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가치를 받아들이게 하고 부정적인 가치를 지향하도록 유도한다.⁹¹⁾

90) 崔銀姬, "靑少年犯罪의 豫防을 위한 TV프로 그램의 敎育機能의 強化方案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慶南大學校 敎育大學院, 1991, pp. 38-39.

91) 上揭論文, p. 41.

나) 청소년의 성문제·성역할에 대한 영향

실제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과 지식이 제한되고 아직 가치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靑少年들에게 있어 TV에서의 반복적으로 묘사되는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성행위들은 靑少年들에게 그릇된 성관념과 가치관을 조장하며 이로 인해 성에 대한 조속현상이나 일탈행위가 발생하게 된다.⁹²⁾ 또한 TV에 나타나는 성역할은 아직도 여성은 장식품적 성의 대상물이나 저수준 고용인 등으로 묘사되어 남성에 비해 전문직을 갖지 못하고 주부나 어머니 등으로 나타내며 지식수준이 낮고 수동적이며 독립심이 없는 성향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와같은 TV내용은 靑少年들로 하여금 남녀역할, 성역할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다) 청소년의 사회화에 대한 영향

靑少年들은 TV에서 제시된 특정 1인을 모델로 선정하고 그 모델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모델의 행위를 모방하면서 社會化 과정을 밟게 된다.⁹³⁾ 따라서 靑少年들은 자기 자신의 개성을 살리지 못하고 서로 닮아가고 있다고 보아지며 만일 靑少年 중의 1인이 TV매체를 멀리하고 있다면 다른 자기 또래의 靑少年集團에서 소외를 받게 됨으로 오늘날의 靑少年들은 더 자주 일명 바보상자라고도 할 수 있는 TV앞에 앉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TV는 가정에서의 대화를 빼앗고, 靑少年들의 창조력을 방해하며 수동적인 사고를 하게 만들고, 靑少年들의 성적 문란과 불건전한 이성관계를 조장하고, 그들로 하여금 폭력행위, 비인격적 잔악한 행위 등을 모방하게 하여 靑少年犯罪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신문, 잡지, 서적등

윤리수준이 높은 서적이란든가 학문적인 저서는 문학적 가치가 크나, 저속한 서적, 음란하고 잔인한 소설, 선정적 내용의 주간지, 잡지, 흥미본위의 신문기사

92)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上揭論文, pp.42-43 참조.

93) 대한교육연합회, 「새교실」, 1989. 3월, p.28.

등은 靑少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특히 음란문서는 靑少年들의 성적욕망을 자극하여 그들로 하여금 性犯罪로 몰아넣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암암리에 윤리관의 저하와 범죄적 암시를 가져오게 한다.

주간지 등 잡지에 대한 문제점은 첫째, 범죄물, 섹스물 등 건전치 못한 내용이 많다는 점 둘째, 靑少年層의 관심은 주로 살인, 강도, 및 폭력장면이라는 점 셋째, 靑少年層에 경고적·선도적 입장보다는 흥미위주로 쓴다는 점 넷째, 잡지의 사진과 그림은 감수성이 예민한 이들을 유혹하고 있는 점 등이다.⁹⁴⁾ 또한 신문 사회면의 범죄물 기사는 첫째, 지나친 범죄물 보도를 함으로써 犯罪가 하나의 生活化된 것 같은 인상을 주며 둘째, 지나친 분위기 중심의 보도 태도를 보임으로써 비행성향이 짙은 靑少年들에게 방아쇠적 효과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끝으로 영화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영화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영화의 상업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이나 수입하는 사람들은 그같은 상업성을 내세워 교육적인 면보다는 오히려 흥미위주의 작품을 제작하려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이러한 영화가 靑少年들의 非行을 조장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선정적인 영화 포스터들이 靑少年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져 있는 것도 靑少年의 性犯罪의 원인이 되고 있다.⁹⁵⁾



4) 약물 남용과 청소년 범죄

靑少年의 약물남용⁹⁶⁾은 두가지 측면에서 社會的 害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첫째, 靑少年을 身體的으로는 물론 精神的으로도 황폐화 시킨다는 데 있다. 약물

94) 姜孟鎭, 前揭論文, p. 44.

95) 李卓宰, 前揭論文, p. 56.

96) 약물은 일반인에게 의존성을 갖게 하면서 오·남용되는 물질로 특별한 구분없이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롯하여 환각, 환청, 수면, 마비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져오는 유해 화학물질을 총칭하는 포괄적 의미이며, 보다 광의로는 청소년에게 금지되어 있는 술이나 담배와 같은 기호 식품도 포함된다.

약물남용은 의학적 용도없이 불법적으로 감정세계를 얻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는 것으로써 한마디로 말하면 향정신성 약물의 비의학적 사용을 말하며, 여기서 향정신성 약물은 정신을 향해서 작용하는 약물로써 정신은 뇌에서 나오고 뇌는 중추신경계의 중요부분이므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감정, 인식, 행위에 인위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김상희, “靑少年 藥物濫用過程에 관한 研究”, 『刑事政策研究』, 통권 제 7호, 刑事政策研究院, 1991, p. 38. ; 盧成圭, “非行靑少年의 藥物濫用實態調查”, 『靑少年犯罪研究』, 法務部, 1992, p. 133.

은 소량을 통해서도 환각, 망상, 정신분열증 등 정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 약물의존도를 심화시킴은 물론 내성강화로 인해 보다 강력한 약물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러한 신체적 의존은 나아가 청소년의 건전한 사고를 저해하고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에도 커다란 장애를 발생시키게 된다. 둘째, 약물남용자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환각, 환청, 현기증 등을 느낌과 동시에 극도의 불안감이나 적대감 등을 경험하게 되므로 폭력이나 강도 같은 또 다른 범죄 행위로까지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⁹⁷⁾

여기서는 먼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향을 저해하는 약물의 종류와 그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⁹⁸⁾

대마초(환각제) - 도취감, 수다스러움, 지각장애, 시청각의 감수성 증가 등이 일어나고 다량 복용시에는 환상, 망상, 자아상실 등의 환각상태에 빠지며, 때때로 공포나 적대감으로 인한 정신질환적 발작과 유사한 행동이 일어난다.

본드 - 흡입시 멍청해지고 두통, 오심, 안구의 무의식적이고 빠른 운동, 과도한 타액분비, 복시현상, 이명, 청각장애, 기침, 흥통, 의식적인 일시적 정지, 무의식 상태, 환각, 억제력 상실, 호전적 경향 등을 일으킨다.

각성제(히로뽕) - 이 약물은 일시적 행복감, 자신감, 흥분, 불안, 걱정, 공상으로 인한 공격적 파괴행위를 초래한다.

마약 - 중추신경억제제로 신체조절능력의 상실 및 체중감소, 정신적·육체적으로 둔해지며 몽롱하고 졸리운 상태가 된다.

술·담배 - 정신적 침체 및 불안 증상을 일으킨다.

위에 열거한 약물 가운데 청소년들에 의해 남용되는 약물은 일반적으로 구하기

97) 박정선, "약물남용에 대한 시론",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 18호(1993, 7.8월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 31-32.

98) 자세한 것은 上掲論文, pp. 32-36. : 盧成圭, 前掲論文, pp. 133-134 참조.

쉽다는 것이 청소년들의 약물남용 실태를 더욱 악화 시키고 있다. 약물은 그 제조, 판매, 구입과정, 남용문제들이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며, 술이나 담배는 일반적으로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술이나 담배야말로 청소년들의 건강과 정신을 해치는 물질로 요즘 청소년들이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폭력, 살인 등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의 과다한 술이나 담배는 범죄의 지름길이 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靑少年들의 약물남용은 犯罪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약물남용에 대한 예방책은 犯罪의 해결책도 될 것이며, 靑少年들의 약물남용을 豫防하기 위해서는 靑少年 자신 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5. 諸原因들의 檢討

범죄는 개인의 소질과 환경에 의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위에서는 청소년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개인적 측면과 사회환경적 측면을 조사해 보았다. 특히 사회환경적 요인은 가정, 교육, 사회 환경으로 나누어 보았다.

먼저 靑少年犯罪의 個人的 原因으로 유전적, 정신적, 신체적, 심리적 원인들을 살펴보았다. 이 중 유전적 원인이나 신체적 원인은 靑少年犯罪의 발생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유전적, 신체적인 특징만으로는 犯罪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靑少年期の 정신적·심리적 특징들이 靑少年犯罪의 原因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적·심리적 특징들이 직접적으로 犯罪를 유발 시킨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사회환경적 요인들이 靑少年들에게 정신적·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간접적으로 犯罪를 발생시킨다고 생각된다.

둘째, 靑少年犯罪의 원인이 되는 家庭的 環境으로 빈곤가정, 부도덕 가정, 결손가정, 갈등가정, 시설가정, 애정결핍가정, 혼욕결핍가정, 과보호가정, 맞벌이

가정 등을 살펴보았다. 家庭은 靑少年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집단으로 혈연과 애정으로 결합되어 있는 곳이다. 따라서 올바른 家庭은 靑少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家庭內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靑少年들이 건전하게 성장될 가능성은 적어지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금전적 빈곤보다는 심리적 빈곤 가정, 양부모가 있더라도 가정의 기능이 완전하지 못한 기능적 결손가정 등이 靑少年犯罪의 原因이 된다고 보아지며, 과보호나 지나친 무관심도 靑少年들로 하여금 犯罪의 길로 빠지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세째, 教育環境은 가정 다음으로 靑少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할 것이다. 건전한 교육풍토 속에서 靑少年들은 자기를 계발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으나, 오늘날의 교육은 입시위주교육과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사와 학생관계의 비친밀성 등으로 인해 靑少年들을 건전하게 교육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靑少年들은 공부에 대한 압박감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犯罪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靑少年犯罪의 原因으로 작용하는 社會環境的 要因으로 지역사회환경, 문화적 환경, 대중매체, 약물남용등을 살펴보았다. 이들 사회적 환경은 가정환경, 교육환경 못지 않게 靑少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靑少年들이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보낼 수 있는 靑少年 文化環境의 부족과 상업성을 중시한 대중매체의 불건전성 등이 靑少年犯罪를 부추기고 있다고 본다. 특히 社會的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靑少年들에 의한 性犯罪, 藥物濫用들도 사회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듯 靑少年犯罪는 靑少年 個人的 素質과 社會環境的 原因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발생된다고 보이지만, 靑少年犯罪는 청소년 개인의 자질 보다는 오늘날의 社會環境的 諸要因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된다.

V. 靑少年 犯罪의 豫防과 對策

靑少年은 신체적·정신적·인격적으로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非行에 빠지기 쉬운 반면, 이들에 대한 改善·敎化의 가능성도 비교적 높기 때문에 靑少年犯罪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靑少年犯罪은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남으로 인해 각급 학교, 검찰, 교정기관, 법원 등이 가정과 청소년 단체 등과 함께 敎化善導活動을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은 만족할 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靑少年犯罪에 대한 문제는 여러 방향에서 고찰될 수 있으나 犯罪豫防과 犯罪者의 矯正 내지 再犯防止를 기본 대책으로 하여 어떻게 하면 靑少年犯罪을 質的·量的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靑少年 犯罪은 소년의 犯罪性 자체에서 기인한다기 보다는 우리 사회의 反社會的, 反文化的, 反敎育的 風土 등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정신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못하고 판단력이 미숙한 20세 미만의 소년들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므로 이들을 응징하고 처벌하기 보다는 보호하고 선도해 줄 사회 전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제에서 靑少年犯罪의 豫防과 對策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있어야 한다.

1. 靑少年 犯罪의 豫防

1) 家庭環境的 側面

가. 家庭教育의 強化

가정은 人間이 태어나면서 최초로 접하는 社會的 기본단위로 靑少年을 건전한 社會人으로 육성할 제 1차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産業化와 都市化 과정에서 傳統的 倫理觀의 변화로 인해 가정질서의 변화, 핵가족화, 가정기능의 변화 등으로 가족구성원간의 공동체의식이 희박해져 가고 있고,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靑少年은 學校나 社會의 새로운 환경과 접하면서 새로운 價値觀을 형성하게 되며 이것이 부모의 권위나 기존의 價値觀과 차이가 있을 때 갈등을 겪게 되며 이러한 시기에 부모와의 대화부족, 부모의 과잉기대, 방임 등으로 가정이 적절한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정서불안,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靑少年犯罪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靑少年犯罪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靑少年들의 창조력과 사회적응력, 자기통제력을 기를 수 있는 생활태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教育的 機能이 강화되어야 한다. 家庭教育은 靑少年의 인격형성에 기반을 이루는 것으로 靑少年의 價値觀과 倫理觀을 확립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⁹⁹⁾

가정의 교육적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적 원리는 다음과 같다.¹⁰⁰⁾

첫째, 자기창조의 원리로서 인간의 본질은 자유이며 평등이므로 가정교육은 자녀의 내재적인 소질을 스스로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돕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친근성의 원리로서 교육이란 가까운 생활권의 가정교육에서 부터 시작되어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것이며, 감각적인 것에서 관념적인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직관의 원리로서 가정교육은 자녀들이 그들의 직감으로 의식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깨달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네째, 조화의 원리로서 가정교육은 매나 사랑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義를 대

99) 자세한 내용은 崔華淑, 前掲論文, pp.46-47 참조.

100) 이명곤, "靑少年犯罪의 家庭環境要因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慶南大學校 教育大學院, 1987, PP.80-81.

표하는 아버지와 사랑을 대표하는 어머니와의 조화가 있어야 만 참된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가정위주의 개별적 노력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따라서 현대가정의 여건상 靑少年들의 社會와 家庭에 올바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나. 靑少年 團體의 機能 擴大

靑少年問題의 豫防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건전 가정의 육성이라고 할 수 있다. 건전 가정은 자녀의 바람직한 교육적 기능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核家族化로 인해 家庭이 가정교육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靑少年들에게 적절한 家庭敎育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올바른 인격형성 및 비행예방을 지원하는 역할은 다수의 회원과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는 靑少年團體가 분담하여야 한다.¹⁰¹⁾

家庭敎育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靑少年 團體가 유의할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교육은 전통적으로 가정의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가치관과 규범 등을 익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둘째, 靑少年 스스로가 가정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계획, 실행하는 데 참여하도록 한다. 셋째, 가정교육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의 제고가 필요하며 다른 단체들과의 협력관계가 요구된다.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인 만큼 심한 긴장과 불안 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한 靑少年은 자기 자신의 自我觀과 價値觀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기성 세대와의 價値觀의 차이로 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된다. 따라서

101) 崔華淑, 前揭論文, p. 49.

靑少年들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靑少年期에 겪는 갈등과 문제들을 靑少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적인 상담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靑少年의 건전 육성에 대해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家庭은 오늘날에는 가족구성원간의 이해부족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靑少年과 問題家庭에 대한 상담을 해 줄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과 시설이 필요하다.¹⁰²⁾

다. 缺損家庭과 貧困家庭의 靑少年 保護活動

빈곤가정이나 결손가정의 靑少年들은 부모와 가정의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이 결핍된 상태에서 그들의 靑少年期를 보내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정신적으로 좌절 또는 사회에 대한 반항심에 빠져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들 要保護家庭의 靑少年들에 대한 보호·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것은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사회전체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要保護家庭의 靑少年들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청소년 단체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¹⁰³⁾

첫째, 要保護家庭 靑少年들이 회원으로 청소년 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비면제, 교재 및 복장제공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둘째, 직업교육 및 교양교육을 중심으로 이들 청소년들이 삶에 대한 희망과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이들을 참여시킨다.

셋째, 하나의 활동단위체가 하나의 施設家庭 또는 少年·小女家長들과 결연을

102) 上掲論文, p. 50.

103) 上掲論文, p. 51.

맺고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다.

네째,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이들 家庭의 靑少年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정책적 지원을 통해 설치된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라. 家庭에서의 父母의 役割

가정에서의 父母들은 첫째, 애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해야 한다.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만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모의 사랑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때 자녀들도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인간으로 육성될 수 있다. 지나친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는 의존적이고 독자적 판단력과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이기적이고 우애심이 없는 인간이 되기 쉽다. 둘째, 변화하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셋째,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독립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존엄성과 인격이 있다. 따라서 부모 자신의 가치관과 행동 기준을 강요하지 말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양육해야 한다. 네째, 자녀와 대화를 가진다. 그 속에서 자녀의 갈등과 고민을 해결하고 이상적인 價値觀과 社會觀을 정립시켜 주어야 한다. 다섯째, 명령·지시적인 훈계 방법을 지양해야 한다. 명령·지시가 강화되면 비판적이고 맹목적인 인간이 되기 쉽고 이로써 창의성 啓發이나 자발적 행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며 자기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는 인간이 되기 쉽다. 여섯째, 자기 가정에 대해서 금지를 갖도록 한다.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가정이 자랑스럽고 떳떳하도록 자기 가정에 대한 전통성과 역사를 익히게 하고 가족구성원간에 대하여 금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¹⁰⁴⁾

P. 뒤프와예는 자녀의 인생지도라는 저서의 서문에서 자녀의 생활을 바르게 지도

104) 李卓宰, 前掲論文, pp. 65-66. ; 李國炯, 前掲論文, pp. 54-55.

하려면 첫째, 자녀들에게 잘못된 점을 성심껏 깨우쳐 주어야 한다. 둘째, 사물을 바로 보는 눈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한 사람의 행동이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네째, 남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다섯째, 착하고도 굳건한 의지를 가지는 것을 여섯째, 참다운 믿음을 갖는 것을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⁰⁵⁾

이렇듯 父母들이 자녀들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화롭게 구성하고 언행이 자녀들이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일 때 靑少年들도 건전하게 社會生活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學校環境的 側面

學校는 家庭을 떠나서 외부와 접촉하게 되는 최초의 기관으로 家庭과 더불어 중요한 社會化의 媒體가 된다. 현대에 와서는 學校는 지식의 전달만이 아닌 靑少年들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학교 생활에의 적응에 장애가 생기면 잘못된 社會的 態度나 價値觀이 形成되어 건전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學校教育은 全人教育의 목적하에 인간성 교육에 중점을 두어 靑少年의 범죄나 비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¹⁰⁶⁾ 즉 學校教育은 靑少年들의 개성과 상이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하게 피상적인 학식만을 주입시킬 것이 아니라 도덕적·정신적 고무와 지성의 계발 양자에 중점을 두고 행해져야 할 것이다.¹⁰⁷⁾

가. 인간교육의 강화

靑少年들에게 확고한 價値觀과 倫理觀을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105) 김영숙, "靑少年 비행의 원인과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제 11집, 대신대학교, 1991, PP. 153-155.

106) 李卓宰, 前揭論文, PP. 81-82.

107) 金德容, 前揭論文, P. 55.

다. 확고한 倫理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입시위주, 성적위주의 교육 풍조가 만연한 나머지 全人的 教育¹⁰⁸⁾에는 너무 소홀해 靑少年들이 바른 人生觀과 價値觀을 확립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교육에 의한 자녀의 사회적 계층상승만을 기대하는 부모나 사회의 잘못된 인식은 학생의 개인적 욕구나 흥미를 무시한 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경쟁에서 패배하고 소외된 靑少年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우리교육의 현실이다.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열등감과 왜곡된 자아 개념으로 자신의 장래를 포기한 채 좌절하고 방황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靑少年問題를 파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은 단순한 입시위주의 교육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에 대처할 능력과 의지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¹⁰⁹⁾ 즉 기존의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를 쇄신하여 全人으로서의 人間을 강조하는 일관성 있는 인간중심, 도덕중심의 교육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에 순응할 수 있는 價値觀을 확립시켜 주어야 한다.

나. 학생생활지도의 강화

각 개인은 나뉠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환경속에서 성장·발전해 감으로 學校에서는 이러한 개성을 발견하고 계발시키는 생활지도가 요청되며, 개인의 욕구와 관련하여 自我를 실현하고 個性을 신장시키며 올바른 생활태도를 함양하는 차원에서 생활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學生生活指導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신체, 정서 등의 문제와 학교, 가정, 사회에서 당면하는 제반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정되고 결합된

108) 知·德·體의 조화속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실현하면서 협동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경향을 말한다.

109) 姜孟鎭, 前揭論文, PP. 60-61.

성장을 하도록 도와주는 봉사의 과정이다. 따라서 학생생활지도는 피동적인 지도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도, 외형적이고 타율적인 지도에서 내면적이고 자율적인 지도로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상담활동의 강화와 훈육적 지도가 요청된다.¹¹⁰⁾ 全教師를 대상으로 상담기법에 대한 자체 연수를 실시하여 학생상담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아성장, 심성개발, 성취동기유발, 학습능력증진, 진로결정 등에 도움을 주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¹¹¹⁾ 또한 생활지도의 방향은 정신교육의 강화, 학생복장 및 소지품에 대한 지도, 건전활동의 활성화, 문제학생의 특별지도 등을 들 수 있고 학교에서의 문제학생에 대한 징계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懲戒는 오히려 學生을 더욱 犯罪學生으로 이끄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學生生活指導의 効率化를 위해서는 학교장을 비롯한 전 교직원을 카운셀러화하여 학생의 자율성 함양에 역점을 둔 상담과 진로지도 및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 건전한 靑少年團體 活動의 권장을 통하여 강인한 의지력과 자율성을 함양하여 非行의 사후 수습에 앞선 豫防·指導에 힘써야 한다.¹¹²⁾

다. 특별활동의 활성화

개성 신장⁹⁾ 위해 특별활동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러한 특별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자신의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시간을 부여하고 자신의 재능이나 취미, 특기, 소질 등을 계발토록 배려한다. 靑少年들이 학급활동, 자치활동 및 클럽활동을 통해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자기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하던 자기를 발견하며, 취미와 소질을 계발하여 여가를 선용할 때 靑少年犯罪는 豫防될 수 있을 것이다.¹¹³⁾

110) 朴哉昊, 前掲論文, P. 59.

111) 姜孟鎭, 前掲論文, P. 62.

112) 김영숙, 前掲論文, P. 156.

113) 朴哉昊, 前掲論文, PP. 59-60. ; 李卓宰, 前掲論文, P. 83.

라. 교육환경과 학교주변환경의 개선

교육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도시집중으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의 과대규모 학교, 과밀학급, 2부제 수업 등과 같은 교육환경과 학교의 제반시설 즉 체육시설, 도서관시설, 과학실험실습도구, 생활관 등은 같은 부대시설의 미비와 老朽는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약화시켜 학력저하는 물론 올바른 인격형성에도 문제를 일으킨다.¹¹⁴⁾ 이러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과감한 시설투자와 지역독지가의 후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각종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學生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할 수 있는 학교의 주변환경이 각종 유흥업소, 불량식품 판매업소, 무허가 오락장, 주점 및 靑少年들에게 흠을 끼칠 만한 環境이 산재해 있어 學生들의 犯罪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주변의 상인들은 靑少年들을 보호하려는 의식을 가져 불량식품의 판매를 금하고, 유흥업소의 靑少年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 그 자체의 노력을 하고, 정부와 사회단체에서도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엄한 조치를 취할 때 靑少年犯罪는 豫防될 수 있을 것이다.¹¹⁵⁾

마. 교사의 자격향상

교사는 학생과 인격적 접촉을 통해서 학생의 全人格을 교육적으로 보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는 인격형성자로서의 資質과 교직에 대한 自負心을 가지고 불합리한 社會속에서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學生들이 교사를 기피하며 犯罪에 젖게 되는 것은 교사가 두려한

114) 姜孟鎭, 前揭論文, P. 62. ; 朴哉昊, 上揭論文, PP. 56-57.

115) 金春植, “靑少年犯罪의 原因과 豫防對策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1990, p. 88.

교직관이 확립되지 않아 그들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고 잦은 질책이나 구타를 하는 데서 그 원인이 있음을 볼 때 교사는 조건없는 사랑으로 올바른 교육과 훈화를 통해서 靑少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사는 학생 개개인에 대해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대화로써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3) 社會環境的 側面

家庭과 學校가 靑少年의 인격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直接·間接으로 社會環境도 靑少年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준다. 특히 地域社會의 環境은 靑少年犯罪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靑少年犯罪의 豫防은 가정과 학교만을 통한 예방책 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靑少年犯罪를 豫防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 모두가 협력을 하여야 한다.

가. 有害環境의 淨化

靑少年들이 건전한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는 불량 유흥업소, 악덕 숙박업소, 주류판매업소, 매춘지역, 불량청소년들이 모이는 사설강습소, 사설독서실, 극장주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거나 제거하는 등 사회유해 환경정화에 힘써야 하며, 이와 아울러 성인들의 사치·낭비·향락풍조 등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향락주의·물질만능주의의 팽배 등으로 타락한 일부 악덕업자들이 未成年者의 유흥업소 출입을 묵인하거나 주류를 판매하고, 심지어 다방과 만화가계에서 음란비디오를 상영하거나, 이용업소, 숙박업소 등에서 未成年者의 혼숙 및 유흥행위 알선 등의 변태 영업을 자행하고 있어 사춘기 靑少年들로 하여금 犯罪를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靑少年들에게 유해한 환경의

정화를 위하여 관계 부처 및 지역 정화 조직 등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대처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하는 한편, 업종별 자율정화 활동을 전개토록 하여 靑少年들이 좋은 환경에서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¹¹⁶⁾ 특히 정부는 靑少年들을 대상으로 주류판매, 담배, 불량서적, 음란비디오 등을 매매하는 자들을 적발하여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¹¹⁷⁾

나. 청소년 복지시설 확충

우리 주변에는 성인들을 위한 시설들만 산재해 있지 靑少年들을 위한 시설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따라서 감수성이 예민한 靑少年들은 성인문화에 쉽게 접촉함으로써 불량화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靑少年들이 건전하게 여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화적 시설들이 확충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조성이 이루어질 때 靑少年은 안정된 정서하에서 여가를 즐기고 자기를 계발할 수 있게 되어 보다 건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¹¹⁸⁾

다. 사회교육의 강화

靑少年犯罪는 사회전체에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犯罪에 대해서는 단편적이고 미봉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여기에 성인들에 대한 敎育이 필수적이라 하겠다.¹¹⁹⁾ 오늘날 성인들의 이기주의, 인명경시풍조, 소비성 쾌락주의, 성도덕 문란, 무질서한 사회환경 속에서 우리의 靑少年들이 올바르게 자라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社會價値觀을 확립하여 성인들 자신이 몸소 지키며 행동할 때

116) 金永蘭, "靑少年犯罪의 實態分析과 그 對策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1989, pp. 80-81.

117) 李卓宰, 前揭論文, p. 70. ; 金春植, 前揭論文, p. 89.

118) 李卓宰, 上揭論文, p. 71.

119) 金德容, 前揭論文, p. 59.

靑少年들도 이를 본받아 목적없는 방황이나 충동적인 행위를 덜 하게 될 것이다.¹²⁰⁾

라. 매스미디어에 대한 단속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신문, 잡지, 영화, 연극, 라디오, TV, 비디오, 각종 불량서적, 음서, 불량간행물 등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靑少年들로 하여금 犯罪를 유발시키고 있다. 일부 매스미디어는 자신의 역할을 이탈하여 저속하고도 선정적인 흥미 본위의 내용을 제작하는 데 급급함으로써 靑少年들의 非行과 犯罪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따라서 靑少年들의 호기심, 모험심, 모방심을 자극하여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소재를 편성하지 않도록 제작자들이 자율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폭력성과 음란성을 조장하는 보도, TV, 비디오, 불량서적, 음란서적 등을 강력하게 단속하여야 할 것이다.¹²¹⁾

대중매체를 방송매체, 활자매체, 공연물 및 광고물로 나누어 그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방송매체

방송매체는 온가족이 시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부도덕한 내용이나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내용, 범죄 수법의 과다한 노출 등이 묘사되게 되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靑少年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많다. 대중매체 측면에서 보는 靑少年犯罪의 豫防對策을 보면 ① TV광고의 정화문제로 광고방송이 靑少年들의 정서문화와 의식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을 감안하여 광고정화에 관심을 갖고 해로운 언어내용을 시정하고 퇴폐적인 생활풍조를 조장하는 내용을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② 靑少年 정서 순화에 유해한 성인 프로그램의 골든 아워대 편성을 지양하고, 청소년 선호도가 높은 쇼, 드라마, 코메디에 있어 저속한 소재, 과다노출, 호화 사치성 무대설치 등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방송내용의 적극적 억제가 요청되며

120) 李卓宰, 前掲論文, p. 71.

121) 金春植, 前掲論文, p. 91.

③ 최근 전자 및 반도체 공학의 발달로 새로운 영상매체가 개발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무허가 유선방송업소가 대거 난립, 그 경쟁수단으로 유해·저질비디오를 반영하는 등 국민정서 특히 청소년의 건전한 價値觀 형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통제와 법제도화가 요청된다.¹²²⁾

(2) 활자매체의 정화

청소년 대상 도서와 만화 등 각종 출판물은 靑少年의 지적 수준향상, 정서함양 및 인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의 음란·퇴폐 출판물의 증가와 폭력만화 등의 무분별한 수입은 靑少年의 건전한 정신을 해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단체는 유해한 저속·퇴폐 음란물에 대한 심의, 경고,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그에 대한 단속을 더욱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공연물 및 광고물의 정화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나 비디오 등은 더 철저한 단속과 보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즉 공연물에 대해서는 事後監督을 철저히 하여 靑少年에게 관람이 금지된 것은 靑少年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靑少年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폭력·음란·저질 비디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고편 영화 포스터, 신문광고 등은 事前審議를 強化하고 학교주변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부착하지 못하도록 制裁措置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¹²³⁾

라. 약물남용에 대한 단속과 예방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을 豫防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家庭에서 가출한 靑少年들의 藥物濫用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가정

122) 姜孟鎭, 前揭論文, P. 57. ; 李卓宰, 前揭論文, P. 75.

123) 李卓宰, 上揭論文, P. 76. ; 姜孟鎭, 上揭論文, P. 58.

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家庭에서 父母는 대화를 통해 자녀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며,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그들의 친구관계가 어떤지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¹²⁴⁾

둘째, 자녀의 藥物濫用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학부모용 책자 발간·보급 및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계몽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¹²⁵⁾ 또한 藥物의 폐해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충분히 구비하여 대중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약물사용에 경종을 울리는 광고프로그램의 제작을 통해 藥物에 빠지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선택하여 그 과정과 결과를 심층 분석하여 공개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¹²⁶⁾

셋째, 학교에서는 교과과정에 일반과정과는 별도로 약물의 유해성에 대한 시청각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의 자율적 활동을 강화하여 모래 집단내의 탈선 분위기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¹²⁷⁾ 그리고 학교는 자퇴나 퇴학을 통해 문제학생을 격리시키기 이전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¹²⁸⁾

넷째, 사회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본드 등 흡입제의 환각성분에 대한 규제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유기용제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본드나 기타 약물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유통과정을 통제하는 일도 필요하다.¹²⁹⁾ 靑少年들이 藥物濫用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폭력, 강도, 절도, 강간 등을 범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는 靑少年들의 약물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노력 외에도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24) 최영신, "청소년의 약물남용과 비행",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 2호(1990. 11. 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 28.

125) 體育靑少年部, 「靑少年白書」, 1992. P. 356.

126) 박정선, 前揭論文, P. 40.

127) 上揭論文.

128) 최영신, 前揭論文, P. 28.

129) 上揭論文.

2. 制度的 改善을 통한 豫防對策

오늘날 靑少年犯罪은 날로 증대되고 있고 그들은 흔히 成人 犯罪者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少年犯罪者들을 위한 矯正處遇方法의 문제는 특히 중요시 되지 않으면 안된다.

犯罪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豫防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미 행해진 犯罪를 적절한 방법으로 矯正處遇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靑少年犯罪의 再犯率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 矯正處遇方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靑少年 犯罪者는 심신의 미숙으로 주변 환경의 빠른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犯罪를 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인범 죄자보다 敎化·改善이 용이하다. 여기에서는 少年犯罪者의 處遇制度와 그 問題點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善導 條件附 起訴猶豫制度의 內實化

1978년 광주지검이 少年에 대한 善導條件附 起訴猶豫制度를 창안하여 실시한 결과 靑少年犯罪者를 少年院이나 矯正所에 보내 刑罰을 가하는 것보다 善導를 조건으로 起訴猶豫로써 석방하여 주거지 근처의 선도위원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善導하게 하는 것이 효과를 거두어 再犯率이 줄어 들었다는 통계가 나오자 1981년 1월 20일 법무부 훈령 제 88호로서 少年善導 保護指針을 제정하여 전국에 확대·실시하게 되었다.

善導條件附 起訴猶豫制度는 통상의 起訴猶豫를 결정함에 있어 계속 善導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犯法少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민간소년 보호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起訴猶豫의 결정을 하는 制度를 말한다.¹³⁰⁾ 善導猶

130) 孫東信, "靑少年非行에 관한 考察", 碩士學位論文, 圓光大學校 敎育大學院, 1989, P. 34.

豫의 대상자는 주로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犯罪少年으로써 범죄 내용의 輕重에 관계없이 再犯可能性이 희박한 자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公安事犯이나 凶惡犯은 제외하며, 대상소년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犯罪事實을 참작하는 외에 보호자와 교사 등의 의견을 들어 소년의 평소 성격도 참작한다. 善導委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도위원이 자진하여 선도보호책임을 인수하거나, 담당검사가 적당한 善導委員을 선정하여 선도보호책임의 인수를 권고하며, 어느 경우든지 선도위원이 犯罪少年을 예비조사한 후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少年으로부터 준수사항을 지키고 새사람이 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起訴를 猶豫한다. 善導期間은 6월 또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걸쳐 연장할 수 있으며 善導猶豫를 받은 소년이 준수사항을 현저히 違反하였을 때에는 善導猶豫를 取消할 수 있다.¹³¹⁾

감수성이 강한 靑少年들은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지도하면 쉽게 善導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犯罪前보다 더 선량하고 모범적인 학생이 되어 주위의 학생들에게까지 犯罪豫防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므로 改悛의 情이 보이는 청소년들은 矯導所·少年院 등에 수용하기 보다는 국가의 장래나 사회정화에 열의가 있는 자발적인 인사 중에서 위촉된 善導委員에게 맡겨 필요한 경우에는 물질적 원조는 물론 상담·대화 등을 통해 개별 선도함으로써 더 근본적인 改善의 효과를 거두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¹³²⁾

그러나 현행 善導條件附 起訴猶豫制度는 다음과 같은 問題點들을 갖고 있어 그 實効性을 크게 거두지 못하고 있다.

첫째, 少年善導에 관한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경력 등의 자격이 없는 善導委員

131) 朴在允, “靑少年에 대한 效果的인 再犯防止 對策”, 「靑少年犯罪研究」, 法務部, 1991, PP. 20-21.

132) 孫東信, 前掲論文, P. 34.

들이 靑少年犯罪者를 상대하고 있어 少年犯罪에 대한 사후 관찰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善導委員의 형식적 지위 부여로 인해 犯罪少年의 再犯防止를 위한 관찰 활동은 오로지 善導委員들 자신의 열의와 사명감에만 의존하고 있어 영구적인 제도장치로서의 실효성이 없으며 셋째, 善導委員들이 觀察業務에 대한 전문지식의 결여로 인하여 善導保護制度의 觀察運營上 善導委員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¹³³⁾ 따라서 起訴猶豫制度를 좀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諸問題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2) 少年鑑別所의 機能強化

少年 鑑別所는 소년법 및 소년법원에 따라 法院의 少年部로 부터 위탁된 소년을 일정기간 동안 수용하면서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사회사업학 등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근거하여 신체적·심리적·환경적 측측면의 조사·분석을 통해 소년의 자질을 과학적으로 진단·감별하는 곳으로 감별 결과를 法院 少年部에 보내 보호처분의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少年院 및 保護觀察所에 矯正處遇指針을 제시하며, 사회에 복귀하는 少年에 대해서는 保護者에게 事後指導에 필요한 지도방법을 권고하는 등 再非行 防止를 위한 시설이다.¹³⁴⁾ 少年鑑別所는 법원의 심판절차를 기다리는 기간동안의 수용이며, 矯正機關에 의뢰하기 전에 사용되는 시설이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¹³⁵⁾

鑑別이란 소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디에 있으며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세명하기 위하여 소년의 환경, 성격, 생활정도, 부적응 실태 등 제반 자료를 수집

133) 安慶太, 前掲論文, p. 66.

134) 許南順, "少年鑑別所 收用少年의 家族關係에 관한 研究", 「靑少年犯罪研究」, 法務部, 1991, P. 205. ; 體育靑少年部, 「靑少年白書」, 1992, P. 374.

135) 文宜和, 李璟禧, "少年犯 施設處遇過程에 있어서의 民間 참여 擴大方案", 「靑少年犯罪研究」, 法務部, 1991, P. 270.

하고 이를 종합, 분석, 진단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¹³⁶⁾ 이러한 鑑別이 靑少年의 범죄발생의 예방에 기여하는 것은 말할 나위 조차 없다.

우리나라는 1977년 7월 27일에 서울소년감별소를 처음으로 1991년 현재 서울, 대구, 대전, 부산 등 4개의 少年鑑別所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少年院에서 少年鑑別所의 임무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¹³⁷⁾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靑少年犯罪者의 處遇가 실질적인 면에서 부진한 상태에 있으며, 犯罪少年이 어떠한 면에 흠결이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판단이 없이 원시적으로 少年犯罪를 處遇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신병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등 행동과학에 대한 지식과 임상경험을 쌓은 전문조사관들로 하여금 과학적인 감별 조사가 행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鑑別을 하는데 있어서도 개개인을 중심으로 정신감정, 지능검사, 적성검사, 흥미검사 등을 비롯하여 少年들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 및 사회환경 등을 조사하고 그들의 행동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 정확히 鑑別하여 적절한 교정효과를 얻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靑少年은 일반적으로 자아개념의 확립이나 도덕의식이 발달되지 않은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靑少年을 위한 처리 및 처우의 개별성이 성인범죄에 비하여 훨씬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非行靑少年의 처리나 처우에 있어서는 罪質이나 罪名에 기준을 두어 처리하기 보다는 그들의 환경, 성격, 연령 등을 고려하여 어떠한 처리방법이 과연 그들 非行靑少年의 矯正을 위하여 도움이 될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少年鑑別所는 非行靑少年의 處遇의 個別化를 위하여 적극 권장되고 활성화 되어야 한다.¹³⁸⁾

136) 金德容, 前掲論文, P. 64.

137) 許南順, 前掲論文, P. 205.

138) 上掲論文.

3) 少年院과 少年矯導所에서의 矯正教育의 改善

少年院은 犯罪少年, 觸法少年, 虞犯少年 등을 수용하여 교정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少年院의 矯正教育은 규율있는 생활속에서 보통교육, 직업훈련, 심성순화, 심신의 보호, 지도를 통하여 保護少年이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全人的인 成長·發達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각종 집단 또는 개인지도를 통한 非行性格의 치료로 퇴원 후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며, 保護少年의 심신발달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인정과 규율 있는 생활속에서 保護少年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킴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길러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¹³⁹⁾

少年矯導所는 형사처벌을 받은 少年犯罪者를 成人犯罪者와 분리 수용하여 靑少年에 맞는 矯正處遇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로 인격도야와 소질계발,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재소자 정신교육, 학과교육, 생활지도,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¹⁴⁰⁾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少年院과 矯導所에서 일정기간을 거쳐 나온 靑少年들 중에 재차 犯罪을 저지르고 있는 少年들이 많다. 이는 少年院과 矯導所가 拘禁이나 處遇의 여러가지 면에서 少年犯罪者의 教化·改善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少年院과 少年矯導所의 개선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少年矯導所와 少年院은 犯罪者의 사회격리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귀를 위한 교화장인 만큼, 在所者들에게 새로운 價値觀을 정립하는 정신교육을 강화토록 교과교육과 원내생활의 모든 과정을 道義教育의 기회로 활용하고, 또한 직업훈련에 있어서도 퇴소 후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새로운 종목을 개발하고

139) 자세한 내용은 體育靑少年部, 「靑少年白書」, 1992, PP. 378-392.

140) 자세한 것은 「靑少年白書」(1992), PP. 392-396 참조.

질과 수준을 높이는데 시설과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철저한 1인1기의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사회 적응력을 배양토록 하여야 한다.¹⁴¹⁾ 院生들이 學生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敎科敎育을 위주로 하고 學生이 아닌 경우에는 敎科敎育과 職業敎育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떠한 교육이든 院生의 인격형성이나 행동 부적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런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임상치료적인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그 방편으로 價値觀敎育, 道德敎育 등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¹⁴²⁾

둘째, 少年院의 경우 모범생들로 진학반을 편성하여 별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진학 중단을 없게 하고 在學生에게는 통학할 수 있도록 외출제도를 대폭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少年犯罪者들을 다스리는데 재원과 인력투자가 요청된다. 현재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반퇴원기간 중 통신지도, 출석지도, 방문지도 등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도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과감한 예산과 인력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靑少年 犯罪者를 다스리는 전문요원양성이 요구된다. 非行이나 犯罪를 정서·행동장애의 한 유형으로 보는 현대의 추세에 따르면 이들의 장애를 바로잡고 건전한 인성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少年院과 矯導所內的 職員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직원들의 數的으로도 부족하지만 그보다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인력 부족현상이 두드러 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非專門的 職員으로는 소년을 개선, 사회복귀 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심리, 교육, 직업, 사회복지, 의료 등 각계의 專門家들과 협력체제가 이루어

141) 安慶太, 前掲論文, PP. 68-69.

142) 李潤鎬, “少年院 敎育機能의 強化方案”, 『靑少年犯罪研究』, 法務部, 1991, PP. 92-93.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집단지도 사업 및 개별지도사업을 전공으로 하고 지도·보호의 기법을 숙달한 직원을 채용·배치토록 함으로써 處遇의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處遇만이 少年院과 矯導所에 수용되는 데서 오는 역기능을 극복하고 處遇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된다.¹⁴³⁾

다섯째, 少年院과 矯導所의 시설환경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院生과 직원은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共同體로써 기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급적 少年院이나 矯導所의 環境과 분위기를 현실사회에 가깝게 조성해야 하고, 自律性의 신장을 위해서 원내 생활에 있어서 자율생활의 영역을 넓히고, 社會性을 고양하기 위해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며, 性行의 矯正은 시설적응이 아니라 사회적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응력을 위해 社會와의 접촉이 많아야 한다.¹⁴⁴⁾

여섯째, 수용을 완화하고 수용기간을 단기화하여 시설수용에서 초래되는 범죄오염이나 불량문화의 접촉, 사회적 낙인 등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⁴⁵⁾ 수용완화를 위해서는 원내 施鍵施設을 없애는 대신 전체적인 啓戶施設을 하고 생활지도 인력을 확충하여 최소한의 협조적인 측면에서 啓戶를 유지하며, 중간시설의 활용이나 주말휴가 등의 방법으로 수용을 개방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간에만 수용하여 矯正處遇를 행하고 야간에는 자기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나 방학·휴가기간 등을 이용하여 矯正教育을 하는 등 단기간에 矯正教育을 실시하는 것이 靑少年의 再犯率을 줄이는데 한 몫을 할 것이다.¹⁴⁶⁾

143) 崔種源, “少年院生の 處遇에 관한 研究”, 「靑少年犯罪의 原因과 對策」, 제 8회 형사정책 세미나, 韓國刑事政策研究院, 1992, PP. 222-223.

144) 李潤鎬, 前揭論文, P. 93.

145) 金德容, 前揭論文, PP. 63-64.

146) 李潤鎬, 前揭論文, P. 93.

4) 社會的 處遇의 擴大

社會的 處遇는 施設內 處遇에 있어서 拘禁의 폐해인 격리와 엄격한 규율을 완화하여 가능한 한 교정시설내의 생활을 일반 사회에 접근시키고 수형자를 사회와 교통케 하여 그들이 석방된 후의 사회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의 처우 체계를 총칭한다. 이러한 社會的 處遇의 대표적인 예로 開放處遇를 들 수 있겠다.

開放處遇는 수형자로 하여금 사회내의 시설에 출입·접근케 함으로써 시설내 처우의 폐해를 제거하고 本人의 자주적 태도를 촉진시키며 생활지도, 직업훈련 기타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육적 처우를 행함으로써 矯正處遇를 도모하는 처우로 開放施設處遇, 外部通勤制, 歸休制, 週末拘禁制 등이 있다.¹⁴⁷⁾

(1) 開放施設處遇

開放施設處遇는 재래의 일반 矯導所와는 달리 높은 담이나 감시대, 자물쇠, 쇠창살 등 구금확보를 위한 인적·물적 제반 장치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완화하고 수용시설 자체가 일반사회의 학교 또는 기숙사와 같은 환경을 갖추고 수형자에게 신뢰와 책임을 부여하여 在所者들이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開放處遇施設로는 1988년 11월 30일 수용정원 300명 규모의 천안 개방교도소, 그리고 1988년 11월 27일 신축 이전한 건평 300평에 수용규모 100명의 군산교도소 병설 개방시설을 설치 운영하는데 그치고 있고 개방시설의 설치 내지 운용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開放處遇의 확대와 그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行刑法을 개정하여 開放處遇制度를 法律的 水準으로 보장하여야 하겠다. 또한 우수한 전문교정공무원의

147) 金秀吉, "累犯防止에 관한 研究", 「行政論叢」 제 1호,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1993, P. 84.

확보와 개방처우대상자의 범위¹⁴⁸⁾도 적절한 기준에 의하여 확대되어야 하겠다.¹⁴⁹⁾

(2) 歸休制

歸休制度란 수형자에 대하여 일정한 이유 및 조건하에서 교도소장 또는 감독관청의 권한으로 기간 및 선행지를 정하여 외출 내지 외박을 허가하는 反自由處遇를 말한다. 이는 비교적 장기 수형자에게 改悛의 情을 촉진시키고 석방 후의 귀주, 취업 등의 준비를 하게 함으로써 수형자의 시설화를 저지하고 그의 사회적 연계 유지와 재사회화를 촉진시키는 데 있다.¹⁵⁰⁾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歸休制度가 시행되어 왔으나 그 허용조건¹⁵¹⁾이 매우 엄격하고 형식화되어 있어 소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 허가요건을 완화하고 횟수와 기간을 늘리는 등 歸休制度를 대폭 활용해야 하겠다.

(3) 週末拘禁制度

주말구금이란 단기자유형의 집행 방법으로 수형자에게 교도소 입소 초기부터 사회생활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사회내에서의 근무 시간이 아닌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矯導所 등의 시설내에서 拘禁生活을 하게 하는 制度이다.¹⁵²⁾ 우리나라는

148) 수형자 개방처우 운영규칙, 제 8조에 의하면 開放處遇 對象者는 주로 過失犯으로 형기가 3월 이상 2년 미만의 성년 남자 수형자이고, 一般犯은 初犯者로서 형기가 6월 이상 2년 미만인 우량 수형자 중에서 면접 등의 심사를 통하여 선발된 자로 규정하여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있다.

149) 金秀吉, 前掲論文, P. 85.

150) Wallace Mandell, "Making Corrections a Community Agency", in Garry Perlstein and Thomas Phelpsceds, Community Alternative to Prison (Senata Monica : Goodyear, 1975), pp.98-108 ; 申致宰, "歸休制度에 관한 考察", 「矯正」, 1992, 7, p. 19.

151) 歸休施行規則 第2條에는 行刑法 제 44조 제 2항에 해당하는 자 - 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기간의 1/2을 경과하고 改過의 情狀이 특히 현저하여 行狀이 우수한 자 - 가운데서 ①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위독한 때 ② 직계존·비속의 혼례가 있을 때 ③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④ 혼련, 시험, 행사, 임양, 취업알선 기타 교화상의 목적이나 작업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歸休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52) 金秀吉, 前掲論文, p. 88.

아직 이 制度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制度는 短期自由刑의 弊害와 行刑經濟 및 過密 拘禁의 解消뿐만 아니라 수형자에게 자신이 범한 罪情에 대하여 責任感을 느끼도록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社會生活에 지장이 없는 야간, 주말, 휴가기간을 이용토록 함으로써 그 학업이나 취업관계에 불량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¹⁵³⁾ 따라서 短期自由刑의 수형자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制度를 신중히 연구·검토하여 도입·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현대 선진제국에서는 수형자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에 기여하려는 목적하에 開放處遇制度를 채택·확대 실시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민 일반과 교정당국의 인식 부족으로 開放處遇가 미미한 실정에 있고, 다만 開放施設處遇와 外部通勤濟 및 歸休制度에 국한되어 消極的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방면의 開放處遇制度를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우리의 실정과 여건에 맞는 實用的인 制度를 채택·시행해야 할 것이다.

5) 保護觀察 制度의 確立

保護觀察制度는 범죄인에 대하여 교정시설내에 수용처벌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善行의 유지를 조건으로 刑罰의 전부 또는 일부의 執行을 보류하여 사회내에서 自由를 주고 국가에서는 전문기관의 개별적인 관찰 즉 감독과 원호를 통하여 積極的으로 그의 更生과 社會復歸를 도와 주는 刑事司法制度이다.¹⁵⁴⁾ 우리나라는 刑의 宣告猶豫, 刑의 執行猶豫, 假釋放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미국이나 일본에서와 같은 有權的 保護觀察制度는 전면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있다. 다만 1988년 12월

153) 上掲論文, p. 89.

154) Edwin H. Sutherland and Donald R. Cressey, *Criminology*, 8th ed., J.B. Lipinlott co., 1970, pp. 461-462.

개정된 소년법에서는 소년에게만 保護觀察制度를 규정하고 198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保護觀察制度는 非行少年과 犯罪少年을 일정시설에 수용하는 대신에 刑罰을 조건부로 猶豫하고 그들로 하여금 사회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지도·보호하여 선도·갱생케 하고 있으나 아직도 재범율이 많은 것을 보면 그 운영에 있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⁵⁵⁾ 여기서는 保護觀察制度의 개선점들을 몇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¹⁵⁶⁾

첫째, 保護觀察制度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보호관찰의 주된 사명은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원호적 지도와 교육 및 사회복귀에 있으므로 특히 保護觀察制度를 직접 수행하는 보호관찰관은 업무 내용상 국가에 의하여 임명된 전문직 공무원으로 하고 그 자격에 있어서는 일정한 자격이 요구된다. 자격요건으로는 범죄학, 심리학, 정신의학, 교육학, 사회사업학, 행정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관련학문분야의 학사학위이상의 소지자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 保護觀察官과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일선에서 직접 보호활동을 담당할 保護委員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한 선발과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무의 전문성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 保護委員은 지역사회에 독지가로 사회적 신망과 범죄자 개선·교화에 대한 열의, 시간적 여유와 활동력을 가진 인사들을 위촉하여 보호관찰관을 보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保護觀察制度의 대상과 선정 문제는 그 목적의 달성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그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선정범위도 성인범죄자까지 확대해야 한다. 만일 범죄인 중 갱생의 의지가 없고 갱생복귀의 가능성이 전혀

155) 現行 保護觀察制度의 運營實態에 관해서는 金秀吉, 前揭論文, pp.94-97. ; 朴英洙, "韓國 少年保護觀察制度의 運營實態 및 運營上 問題點", 「青少年 犯罪研究」, 法務部, 1991, pp.248-255 참조.

156) 金秀吉, 前揭論文, PP.99-100.

없는 자를 보호관찰부로 방면하는 등 대상자 선정을 잘못하면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불안 요인이 가중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罪質이 輕하거나 시설내 처우 중 行狀이 양호하여 개선가능성이 확실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다소 再犯可能性이 있더라도 적절한 보호관찰에 의하여 그것을 해소 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 서는 경우는 保護觀察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¹⁵⁷⁾

세째, 保護觀察에 부할 것이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 합리성의 개념에 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保護觀察의 개시와 종료에 있어 그 대상자에 대한 改善可能性이 우선적으로 심사되어야 하나, 실제 심사과정에서는 범행내용이나 수용시설내에서의 행형 성적 등의 측면에만 치중하고 범죄자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주변환경, 사회의 감정, 재범가능성 등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보호관찰결정에 있어서는 대상자의 사회복귀가능성을 착안하여 판결 전 조사와 환경조사 등을 통한 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¹⁵⁸⁾

네째, 保護觀察은 자유상태에 있는 保護觀察 對象者를 보호관찰기간 동안 사회의 보호 및 범죄인의 사회복귀라는 特別豫防의 處遇이므로 保護觀察의 條件을 각 대상자에게 맞도록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保護觀察決定機關은 觀察對象者에게 관찰기간 동안 선행조건인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이에 위반됨이 없도록 지도·감독하고 원조케 하고 있는데 준수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일괄적으로 열거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에겐 일반적으로 法規의 遵守와 善行의 維持를 근간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대상자의 再犯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57) 朴英洙, 前掲論文, p. 258.

158) 上掲論文, p. 257.

다섯째, 保護觀察業務¹⁵⁹⁾의 內實化가 필요하다.¹⁶⁰⁾ 保護觀察業務는 대상자의 교화·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 상당한 한도에서 행해져야 하며, 그 실시에 있어서는 대상자의 연령, 경력, 심신상태, 가정환경, 교우관계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에 의해야 한다. 保護觀察活動에는 상호 신뢰형 성위에 보호관찰관과 대상자의 지속적인 접촉의 유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保護觀察業務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유능한 保護觀察官을 확보하는 외에 관찰대상자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이에 상응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접촉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찰대상자와의 인간적 교류를 통하여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保護觀察制度의 효율성을 위하여 현행 保護觀察制度가 도입·실시되기 이전에 현실적인 요청에 따라 여러 기관단체에서 실시되어 온 類似保護觀察制度¹⁶¹⁾를 통합하여 관련사무·감독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업무의

159) 保護觀察業務는 指導業務와 援護業務를 주로 한다. 여기서 指導業務는 대상자의 再犯防止와 社會復歸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對象者와의 접촉, 관찰, 지시 및 기타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指導業務는 保護觀察法상의 일반적 준수사항(法 제 37조 2항)이나 法院 및 保護觀察委員會가 부과하는 특별 준수사항(同條 3항, 同法施行令 제 18.20조)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준수사항을 違反할 시에는 拘禁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權力的·強制的 性格을 가지고 있다. 援護業務는 對象者의 改善과 自立을 위하여 행해지는 숙박 및 취업의 알선, 직업훈련의 기회제공, 환경개선 및 기타의 조치를 말하고(法 제 39조), 應急援護(法 제 40조, 同施行令 제 21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이는 福祉的 性格이 강하다.

160) 朴英洙, 前掲論文, p.260.

161) 類似保護觀察制度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檢察廳에서 실시하고 있는 善導條件附 起訴猶豫制度: 이는 檢察에서 위촉된 민간인인 善導保護委員이 善導條件附 起訴猶豫處分을 받은 少年에 대하여 접촉, 원호 등에 의한 善導를 통하여 再犯을 防止하고 社會에의 復歸를 도우려는 制度이다.

② 更生保護法상의 觀察保護: 更生保護法은 懲役 또는 禁錮의 刑의 執行을 종료한 자, 懲役 또는 禁錮의 刑의 執行猶豫를 받은 자, 假釋放 중에 있는 자, 宣告猶豫의 處分을 받은 자, 起訴猶豫處分을 받은 자, 少年院에서 퇴원 또는 가퇴원한 자를 대상으로 直接保護와 間接保護를 하도록 하고 있다. 直接保護는 취업의 알선, 직업의 輔導, 생산도구의 대여 등의 보도원호활동이며, 觀察保護는 출소자 또는 퇴원자의 죄질, 환경, 경력, 연령 등을 참작하여 再犯의 우려가 있는 자에게 실시하는 保護方法으로 更生保護委員이 통신, 면접, 방문 등에 의해 善行을 장려하고 주거, 교우 등 환경을 조정하여 再犯의 소지를 제거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保護方法이다.

③ 社會保護法상의 保護觀察: 社會保護法 제 10조는 보호감호처분집행 중 가출소한 때, 치료감호처분의 집행 중 치료를 위하여 친족에게 위탁된 때는 필요적으로 3년간 保護觀察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준수사항이 부과되고 담당사법경찰관리 및 보호위원이 월 1회 이상 被保護觀察者 또는 그 친족과 면담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와 주요동태 및 치료결과를 확인하고 輔導援護를 취한다. 上掲論文, pp.243-244. ; 朴在允, 上掲論文, pp.18-41.

혼선을 방지할 수 있고 非能率을 배제하여 효율적인 保護觀察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6) 更生保護制度의 効率的 運營

更生保護制度란 刑의 宣告猶豫나 執行猶豫를 받은 자 또는 假釋放, 假退院의 處分을 받거나 형기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에 대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재적응하여 성공적으로 갱생복귀하도록 지도 감독, 보호원호 기타 방법으로 보호하는 社會內 矯正處遇制度를 말한다. 이것은 矯導所나 少年院에서 행하는 시설내 교정 처우인 行刑과는 대립되는 개념이다.¹⁶²⁾

현재 更生保護事業은 少年院과 少年矯導所에서의 出院·出所者를 보호대상으로 再犯의 防止와 경제적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更生保護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① 무의무탁자 ② 연고자가 있어도 거주지까지 갈 비용이 없는 자 ③ 생활수단이 없어 자립할 수 없는 자 ④ 정신적·신체적 흠결로 사회에 적응하기 곤란한 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이들에 대한 保護方法은 자립갱생생활에 경제기반이 없는 자를 일정기간 수용하여 대책을 세워주는 수용보호, 귀주지까지 여비를 제공하여 주는 귀주보호, 출원·출소자 가운데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를 통신, 면접, 방문 등으로 지도를 하는 관찰보호 등 3가지 방법을 쓰고 있으나 현재의 시설과 선도 직원으로는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更生保護事業을 보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¹⁶³⁾

첫째, 현행 제도는 道單位의 支部와 矯導所單位의 支所로 구성되어 있으나

162) 갱생보호제도의 연혁, 기구, 보호대상자, 보호방법, 갱생보호위원회에 대해서는 崔昌植, “非行少年에 대한 更生保護事業 活性化 方案”, 「青少年犯罪 研究」, 法務部, 1990, PP.237-244 참조.

163) 자세한 것은 崔昌植, 上揭論文, PP.245-251. ; 金秀吉, 前揭論文, PP.104-109 참조.

支所에 전담직원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道單位의 支部가 보호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出所者의 대도시 집중화 현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수용으로 인하여 再犯의 위험성이 높으며 指導의 어려움도 수반되고 있고, 연고지 중심의 保護活動을 전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보다 좁은 지역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保護活動이 이루어지려면 현재 更生保護協會가 檢察廳 單位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 지방도시에 支所를 설치하여 지역사회에 보다 밀착된 更生保護活動을 펼쳐야 한다. 그러므로써 出所者의 대도시 집중을 방지할 수 있으며, 支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내의 物的·人的資源을 활용하여 出所者를 教化·善導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일체감을 조성시킬 수 있는 이중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¹⁶⁴⁾

둘째, 更生保護會는 그 산하에 12개 支部가 설치되어 있고 47개 支所가 설치되어 있는 데도 전직원의 수는 124명으로 支部는 정원이 6-12명이며 支所의 경우는 지소장 1인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更生保護法에 규정된 사업을 감당하기 어렵고 그 보호활동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갱생보호직원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 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자질함양에 힘쓰도록 하고, 그 수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支所에 更生保護會 職員을 고정 배치함으로써 교도소장 등 공무원이 지소장을 겸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용중인 출소예정자와의 사전 접촉, 상담을 통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으며, 支所機能의 活性化를 통한 활발한 보호 사업전개로 出所者의 환경을 개선하고 조속히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현행 공안직 공무원과 같은 직급의 보수와 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6급이상의 직원을 특별채용함으로써 타직원의

164) 崔昌植, 上揭論文, P. 245, 250. ; 김효정, "갱생보호사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형사정책 연구소식」, 장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P. 27.

사기를 저하시켜서는 안된다.¹⁶⁵⁾

세째, 要保護者 전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수용시설을 확충하고 각 支部에 적합한 훈련소를 연차적으로 신설하는 등 자체 직업훈련시설을 확충할 것이 요망되며 아울러 在所者의 특성을 고려하고 적성에 맞는 다양한 유망 직종을 개발하고 훈련 직종도 확대하여 훈련의 폭을 넓힘으로써 전시설 수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직업훈련에 있어서는 직업훈련 후의 취업상의 애로와 실적 위주의 훈련으로 인하여 의욕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직업훈련이 필요하다.¹⁶⁶⁾ 또한 사회로 부터의 상당기간 격리된 생활을 해 오던 수형자들이 矯導所 등에서 出所한 후 社會에 적응하는 것이 염려되므로 그 중간단계로서 中間矯導所 또는 中間處遇施設로 옮겨 사회내 상황에 익숙케 하면서 出所 후 취업물색, 가족탐방 등을 행하여 그들의 사회내 적응을 도모하게 함이 필요하다.

네째, 出所者들이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연계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을 알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그리고 알선 후에도 更生保護委員을 연계시켜 지속적인 지도로 직장에서 이탈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고정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섯째, 更生保護委員은 無報酬의 사회 덕망가로서 更生保護會의 각 지부장의 추천으로 법무장관이 위촉하여 각자의 보호구안에서 보호사업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이들의 활동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① 무보수이고 봉사적이므로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담당하는 열성인사가 드물고 ② 열성이 있는 사회인사라 할 지라도 위촉에 필요한 복잡한 절차와 위촉하는데 소요되는 기일이 길어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③ 更生保護委員에 대한 자부

165) 崔昌植, 上揭論文, P. 247.

166) 김효정, 前揭論文, p. 26.

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활동에 참여하였다가도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④ 被保護者를 지도하는 데는 제반지식과 상담기법 등 전문적 지식을 갖추지 못한 保護委員들이 많다. 따라서 更生保護委員을 위촉하는 데 있어서 사회지도급 인사 중심의 위촉을 지양하고 의욕이 있고 실제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중심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의 독지가로서 사회적 신망과 범죄자의 개선·교화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 열의, 시간적 여유, 생활안정, 활동력이 있는 인사들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① 위촉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되는 기일도 짧아야 겠고 ② 무보수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 즉 별도의 更生保護對象制度의 신설과 정부의 포상 기회가 더 많이 주어져야 하며 ③ 保護事業活動을 위한 신분보장을 해 줌으로써 긍지를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며 ④ 更生保護事業을 전개하는 保護委員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외국 更生保護制度의 시찰의 확대와 연수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재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¹⁶⁷⁾

여섯째, 결과적으로 更生保護制度 자체는 일반국민의 협조 없이는 성공될 수 없는 바 적극적인 계몽과 교육적인 측면에서 일반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언론매체를 통한 更生保護事業에 대한 홍보강화로 出所者를 포용하는 사회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하며, 전국 갱생보호대회 개최로 更生保護委員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범죄 예방 의식을 고취시킴과 아울러 전국민적인 범죄추방캠페인을 전개하여 犯罪者의 갱생·자립에 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여 出所者에 대한 고용의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犯罪를 유발하는 환경을 제거해야 하겠다. 특히 兄弟運動(일명 BBS-Big Brothers and Sisters Movement)과 같은 보조 조직의 강화가

167) 崔昌植, 前掲論文, p. 251.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는 更生의 목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犯罪의 豫防에도 큰 효과를 주므로 정책적으로 적극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⁶⁸⁾

일곱째, 保護觀察制度의 시행에 따라 更生保護會와 保護觀察所의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여 현재 更生保護會의 업무 중 생업조성금지급, 직업훈련, 귀주여비지급 등은 保護觀察所로 이관함으로써 일원적이고 실질적인 保護事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更生保護會는 취업 알선 및 민간인의 후원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를 축소 개편하는 한편 更生保護會에 대한 業務指導는 保護觀察官이 행하도록 하여 업무를 保護觀察所 중심으로 一元化할 필요가 있다.¹⁶⁹⁾

이렇듯 更生保護事業을 활성화시켜 큰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고 보조를 대폭 증액하고 更生保護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일반국민이 한결같이 犯罪者들에 대하여 따스한 善意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3. 總括的 考察

위에서 家庭, 教育, 社會環境의 側面과 制度的 改善을 통한 靑少年犯罪의 豫防과 對策을 연구해 보았다.

靑少年犯罪는 그 豫防 側面이 중요하므로 靑少年犯罪의 발생요소를 家庭, 學校, 社會環境 側面에서 미리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家庭에서는 가족원들간에 사랑과 대화를 가져 그들의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學校에서는 지금의 입시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靑少年 개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살릴 수 있는 全人教育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社會에서는 靑少年들에게 유해

168) 金南一, “行法上の 更生保護制度에 관한 研究”, 『矯正』, 1993. 3, p. 48.

169) 김효정, 前揭論文, p. 27.

한 사회환경을 정화하고 그들을 위한 文化的 環境을 조성해 주고, 政府에서는 靑少年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흥업소 단속, 음란하고 폭력적인 대중매체의 단속 등을 강화하는 방법 등으로 靑少年들이 건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각계 각층에서의 靑少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靑少年犯罪은 이와 같이 모두의 노력으로 미리 豫防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靑少年犯罪의 累犯을 줄일 수 있는 矯正處遇制度들의 改善策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현재 靑少年犯罪의 再犯率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靑少年 犯罪者에 대한 현재의 矯正處遇制度로는 靑少年 犯罪者들에 의한 累犯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靑少年들은 靑少年 時期의 심리적 특징과 사회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犯罪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少年院이나 少年 矯導所에 拘禁하여 矯正處遇를 시키기 보다는 保護觀察制度나 更生保護制度 등을 적극 활용하여 靑少年들의 사회 적응력을 길러주고 犯罪者로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保護觀察制度나 更生保護制度를 보다 活性化시키기 위해서는 開放施設處遇, 外部通勤制, 歸休制, 週末拘禁制 등의 社會的 處遇를 확대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VI. 結 論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靑少年犯罪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이고 그동안 靑少年犯罪의 豫防과 非行少年의 處遇 및 再犯防止를 위한 노력이 꾸준히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靑少年犯罪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그 再犯率도 상당하다. 따라서 本 論文은 현재의 靑少年犯罪의 發生率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靑少年犯罪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그 豫防·對策을 社會的·制度的 側面을 중심으로 고찰해 본 것이다.

한편 本稿는 기존의 통계자료와 문헌을 위주로 고찰함으로써 현실의 靑少年犯罪의 연구에 있어 정확성과 적합성이 덜 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靑少年犯罪의 豫防·對策의 實効性을 기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研究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靑少年犯罪의 再犯率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외국과의 비교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외국의 少年保護制度들을 연구·분석하여 우리 현실에 적합한 對策들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연구되어진 주요내용들을 요약함으로써 本稿의 結論에 갈음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靑少年犯罪는 날로 低年齡化, 凶暴化, 集團化, 常習化하는 경향을 띠고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 해지고 있고, 특히 非行少年들의 대다수가 非行과 犯罪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成人 犯罪者로 성장하여 犯罪를 지속화, 생활화 한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非行少年을 合理的으로 處遇하여 그 再犯을 막는 것은 靑少年犯罪의 對策으로써 중요할 뿐만 아니라 成人犯罪를 해결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靑少年犯罪의 豫防對策으로는 靑少年犯罪의 豫防과 再社會化가 포함되는 데 再社會化는 바로 再犯豫防을 의미하므로 결국 靑少年犯罪의 예방을 중요시 하여야

할 것이다. 靑少年은 급격한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과정을 겪으면서 개인적인 정체감 -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 을 확립하기 위하여 역할 혼미(Role-Confusion)를 경험하면서 자체위기 또는 이탈된 正體-그 사회의 가치와 맞지 않은 正體-를 맞거나 스스로 채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갈등, 부모, 교사 및 친구와의 價値觀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非行下位文化와 동일시 되는 과정에서 犯罪를 자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성장단계에 있는 靑少年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력과 자제력이 부족하며 또한 악성감염의 위험성이 큰 반면, 性行의 矯正可能性도 높고 그들의 범행 동기도 단순한 일시적 충동에 기인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犯行 그 자체보다는 犯行을 유발한 靑少年의 특징과 환경을 고려하여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유효 적절한 개화·선도 대책도 필요하겠다.

靑少年犯罪는 靑少年 개인의 素質上的 문제뿐만 아니라 環境的 諸要因과의 복합적 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 학교, 사회, 정부의 어느 일방만의 노력만으로는 靑少年을 바르게 育成·保護할 수 없다. 가정, 학교, 사회, 정부가 靑少年들에게 건전하고 올바른 價値觀을 정립시켜 주고 그들의 욕구 불만을 합리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 협력하여야 靑少年犯罪와 非行은 豫防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가정, 학교, 사회, 정부의 靑少年犯罪의 豫防을 위한 노력들을 요약해 보기로 한다.

첫째, 家庭은 최초로 인간관계를 맺고, 社會와의 접촉을 위한 예비장소로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단위로 부모와 자식이 애정과 존경,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조하면서 살아가는 혈연 단체이다. 그러므로 家庭의 흠결은 자라나는 靑少年들의 인격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며 나아가서는 犯罪에 이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

다. 家庭은 靑少年들에 대한 무관심, 과잉보호, 과잉기대를 갖기 보다는 올바른 애정과 훈육, 충분한 대화 등으로 靑少年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여 자녀들이 건전한 價値觀을 형성하고 올바르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學校는 가정 다음으로 靑少年이 접하는 社會로 이곳에서의 靑少年敎育은 오늘날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어 가는 시점에 있어 중요하다 할 것이다. 學校는 모든 學生들에 대한 올바른 價値觀敎育을 실시하고 全人敎育을 통해서 靑少年들을 건전한 인격으로 성장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성적중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사 1인당의 학생수를 알맞은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社會는 학교 주변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그들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건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靑少年들을 상대로 하는 유흥업소, 불량서적 판매, 음란과 폭력물로 가득찬 매스컴들에 대한 엄중한 단속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靑少年文化의 정착을 위해 세미나, 연극활동, 클럽활동 등을 活性化시키고 갈등과 방황하는 靑少年들을 위한 保護施設과 相談施設 등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政府는 靑少年問題에 대한 행정적 측면에서의 對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즉 靑少年對策을 合理的이고 一貫性있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靑少年團體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靑少年問題를 효율적으로 상담·해결하기 위한 專門家들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豫防對策이 靑少年犯罪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라 할 지라도 기왕에 犯罪를 저지른 靑少年들에 대한 再犯防止對策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에는 少年保護制度들의 제도적 문제점-제도 그 자체의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의 부실함-들로

인해 靑少年들이 계속적으로 犯罪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制度的 側面에서의 犯罪少年의 再社會化와 再犯防止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善導條件附 起訴猶豫制度를 적극 활용하고, 少年 鑑別所의 鑑別機能도 강화하여 이를 기초로 犯罪少年의 보호성의 정도와 필요성에 따라 적절히 處遇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保護觀察이 保護觀察官의 과다한 업무와 數的·質的인 면에서의 부족현상과 관찰보호 프로그램의 미흡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保護觀察所를 가능한 많은 지역에 설치하고 우수한 保護觀察官을 확보함과 동시에 보호위원 등 사회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더 많은 犯罪少年이 효율적으로 保護觀察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犯罪少年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 민간인 참여 확대의 방안도 바람직하다 하겠다. 즉 능력과 자질 및 열성있는 자원 봉사자를 가능한 한 많이 위촉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靑少年들을 건전하게 育成·保護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責任으로 인식하여 家庭, 學校, 社會, 政府가 靑少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질 때 오늘날의 靑少年들은 보다 밝고 건전한 환경 속에서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1. 國 內 文 獻

가. 단 행 본

- 1) 權彛種, 「社會教育과 青少年 指導」, 배영사, 1987.
- 2) 南興祐, 「刑事政策」, 博英社, 1985.
- 3) 閔建植, 刑事政策講論, 弘文館, 1987.
- 4) 愼鎮揆, 「犯罪學 兼 刑事政策」, 法文社, 1991.
- 5) 尹德重, 「犯罪社會學」, 博英社, 1985.
- 6) 尹德重, 「犯罪와 非行少年學」, 博英社, 1988.
- 7) 李圭貳, 「犯罪學」, 世宗閣, 1969.
- 8) 李正贊, 「最新行刑學」, 選民出版社, 1989.
- 9) 鄭甲燮, 「矯正學」, 을지서적, 1990.
- 10) 鄭英錫, 「刑事政策」, 法文社, 1990.
- 11) 鄭元植·李相魯·李星珍, 「現代 教育學 心理」, 教育出版社, 1988.
- 12) 池光準, 「青少年 犯罪와 非行」, 삼신각, 1992.
- 13) 表甲洙, 「青少年 非行原因 理論」, 한국복지 정책연구소 출판부, 1986.
- 14) 許柱旭, 「行刑學」, 一潮閣, 1982.
- 15) 法務研修院, 「犯罪白書」, 法務部 研修院, 1992.
- 16) 體育青少年部, 「青少年 白書」, 1992.

가. 論 文

- 1) 姜孟鎭, “青少年 犯罪의 動向과 그 對策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1989.

- 2) 姜珍腹, “青少年 非行의 發生原因과 豫防對策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檀國大學校 教育大學院, 1990.
- 3) 權奉延, “青少年 犯罪의 特性과 敎化 善導 方案(上)”, 「矯正」, 矯正協會, 1992, 9.
- 4) 金南一, “現行法上的 更生保護制度에 관한 研究”, 「矯正」, 矯正協會, 1993, 3.
- 5) 金德容, “青少年 犯罪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清州大學校大學院, 1986.
- 6) 金東澈, “青少年 犯罪의 環境的 原因과 그 對策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1991.
- 7) 金秀吉, “累犯防止에 관한 研究”, 「行政論叢」 제 1호,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1993.
- 8) 金永蘭, “青少年 犯罪의 實態分析과 그 對策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1989.
- 9) 김영숙,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제 11집, 대신대학, 1991.
- 10) 金榮植, “青少年 非行에 관한 研究”, 「論文集」, 제 4집, 慶南大學校, 1989.
- 11) 金俊鎬, “青少年的 家出과 非行에 관한 研究”, 「刑事政策研究」, 韓國刑事政策研究院, 1992.
- 12) 金春植, “青少年 犯罪의 原因과 豫防對策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1990.
- 13) 김효정, “更生보호사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형사정책연구소식」, 창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 14) 盧成圭, “非行青少年的 藥物濫用 形態調查”, 「青少年犯罪研究」, 法務部, 1992.
- 15) 대한교육연합회, 「새교실」, 1989, 3.
- 16) 文宣和. 李璟禧, “少年犯 施設處遇過程에 있어서의 民間參與 擴大方案”, 「青少年犯罪研究」, 法務部, 1991.
- 17) 朴英洙, “韓國少年 保護觀察制度의 運營實態 및 運營上 問題點”, 「青少年犯罪研究」, 法務部, 1991.
- 18) 朴在允, “青少年에 대한 效果的인 再犯防止 對策”, 「青少年犯罪研究」, 法務部, 1991.
- 19) 朴哉昊, “青少年 犯罪의 生態的인 原因과 對策”, 碩士學位論文,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1990.
- 20) 朴正선, “청소년의 가출에 관한 제언”, 「형사정책 연구소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11. 12.
- 21) 朴正선, “약물남용에 대한 시론”, 「형사정책연구소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7. 8.
- 22) 孫東信, “青少年 非行에 관한 考察”, 碩士學位論文, 圓光大學校 教育大學院, 1989.
- 23) 孫滄化, “青少年 非行에 관한 考察”, 「矯正」, 矯正協會, 1991, 5.
- 24) 申致宰, “歸休制度에 관한 考察”, 「矯正」, 矯正協會, 1992, 7.
- 25) 安慶太, “青少年 犯罪의 原因과 對策”, 碩士學位論文, 朝鮮大學校 大學院, 1989.
- 26) 李國炯, “青少年 非行原因과 豫防對策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檀國

- 大學校 教育大學院, 1989.
- 27) 이명곤, “청소년 범죄의 가정환경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87.
- 28) 李相賢, “家族과 少年 犯罪에 관한 研究(上)”, 「矯正」, 矯正協會, 1990, 12.
- 29) 李爽鎭, “青少年 非行의 環境的 原因 分析과 豫防對策”, 碩士學位論文, 朝鮮大學校 大學院, 1989.
- 30) 李潤鎭, “少年院 教育機能의 強化方案”, 「青少年犯罪研究」, 法務部, 1991.
- 31) 李卓宰, “青少年 犯罪의 原因과 豫防對策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1990.
- 32) 최영신, “비행청소년의 일상생활과 범죄”, 「형사정책 연구소식」, 형사정책연구원, 1991, 5. 6.
- 33) 최영신, “청소년의 약물남용과 비행”, 「형사정책연구소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11. 12.
- 34) 崔銀姬, “青少年 犯罪의 豫防을 위한 T.V프로그램의 教育機能의 強化 方案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慶南大學校 教育大學院, 1991.
- 35) 崔種源, “少年院生의 處遇에 관한 研究”, 「青少年犯罪의 原因과 對策」, 제 8회 형사정책 세미나, 韓國刑事政策研究院, 1992.
- 36) 崔昌植, “非行少年에 대한 更生保護事業 活性化 方案”, 「青少年犯罪研究」, 法務部, 1990.
- 37) 崔炫, “青少年 非行에 관한 社會科學的 照明”, 「人權과 正義」, 大韓辯護

士協會, 1990, 8.

- 38) 崔華淑, “青少年 犯罪의 家庭環境要因과 家庭環境의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淑明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1991.
- 39) 許南順, “少年鑑別所 收用少年의 家族關係에 관한 研究”, 「青少年犯罪研究」, 法務部, 1991.

2. 外 國 文 獻

- 1) Andry, R.G., *Delinquency and Parental Pathology*, London : Press, 1971.
- 2) Mandell, Wallace, “Making Corrections a Community Agency”, in Garry Perlstein and Thomas Phelpsceds, *Community Altermative to Prison* (Sonata Monica : Goodyear), 1975.
- 3) Shoemaker, Donald. J., *Theories of Delinquency: An Examination of Explanations of Deliquent Behavior* (New York : Oxford Univ. Press), 1984.
- 4) Sutherland, E.H. and Cressey, D.R., *Criminology*, 8th ed., J.B. Lipinlott co., 1970.
- 5) Talor, Ian, Walton, Paul and Young, Jack, *The New Criminology : for a social Theory of Deviance*, (London : Roufledge & Kegan, Paul), 1971.

SUMMARY

A STUDY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OF JUVENILE DELINQUENCY

Park, Chang Sik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oo Gil)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high growth of economy coupled with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n the process, it is hard to deny that the growth has accompanied many social problems. Among them the Juvenile Delinquency is the one that we have thought as exclusive problem of advanced society. It has been increased not only in terms of its number but its type. It becomes more cruel, group-oriented, inveterate and getting younger. Also the increasing proportion of student crime, sexual offense and narcotic drug makes the issue more serious.

In fact, the causes of Juvenile Delinquency are various. It can be attributed to the youth's confusion of value system and to their frustrations stemming from the sense of isolation, all of which can be blamed to their families' indifference, unilateral education,

disintergration of society caused by corrupted older generation as well as lack of governmental policies on Juvenile Delinquency.

This study is designed to understand the realities and characteristics of Juvenile Delinquency mainly by analyzing social and cultural aspects and also to find out the fundamental causes of those Juvenile Delinquency and to suggest countermeasure of it.

Chapter II investigate the bi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ological theory about the causes of Juvenile Delinquency.

Chapter III observe the recent trends of Juvenile Delinquency for the last ten years based on the theories depicted in chapter II. Then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Juvenile Delinquency in terms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In chapter IV. V, I try to find out many factors of Juvenile Delinquency and propose the preventive and counter-measures of it.

In conclusion, to guide the youth in a way they should be and solve the problem most effectively, I suggest that we must practice the human education which can make the youth better citizens with the right sence of value at home, school, and society together. And We should give more attention to the teenager with coordinated programs. That is to say, for the youth their family, school, society should be cooperated with each other and make a constant effort.

I hope that this study provide an insight to the problem and, as a result, suggest alternative measure on the Juvenile Delinquency.